

# 구동독 농가들을 위한 농업 정보

번역 : 전 순 자  
북방농업실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 머 리 말

2차대전 후 40여년간 지속되어 오던 독일의 분단상태는, 1990년 10월 동독이 독일연방에 가입함으로써 마감되었다. 혹자는 독일 통일에 대해 전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따른 갑작스런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 후에도 계속된 내독간 특수관계, 1972년의 기본조약, 1990년의 국가조약 제정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위한 과정은 결코 짧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국제사회의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민족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후 많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영토적인 측면에서 분단상태의 일소와 균형회복이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볼 때 이미 먼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구호의 단계를 뛰어 넘어 현실적 준비단계에 한시바삐 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통독과정은 통일과정의 한 형태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본 자료집은 독일연방 식품농림성에서 발간한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편집한 것이다. 우선 1집은 통독당시의 구동독농업현황, 구조개편 과정 및 통독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집, 3집 및 4집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시책과 구동독 농가들을 위한 질의응답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부문의 각 세부적인 분야별로 각론적인 자료제시가 필요하지만 이는 자료축적이 좀더 이루어지고 난 후로 미루기로 한다.

통독과정의 농업자료와 연구결과를 앞으로도 계속 발간하기로 약속하면서, 본자료집이 관련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92. 12

원 장 許信行

빈

면

# 目 次

|                                |    |
|--------------------------------|----|
| I. 주요농업시책 .....                | 1  |
| 1. 협동농장의 해체와 합리적 해결 .....      | 1  |
| 2. 농업분야에 있어 기업형태 .....         | 6  |
| 3. 구동독지역의 경지재편성 .....          | 17 |
| 4. 협동농장의 구조혁신 촉진시책 .....       | 25 |
| 5. 구동독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적응보조금 .....   | 30 |
| 6. 구동독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추가적응보조금 ..... | 34 |
| 7. 농업을 위한 세제상의 특별규정 .....      | 36 |
| II. 농업시책에 대한 질의·답변 .....       | 47 |
| 1. 농업구조정책 .....                | 47 |
| 2. 시장정책과 가격정책 .....            | 62 |
| 3. 사회정책과 임금정책 .....            | 67 |
| 4. 조세정책 .....                  | 70 |
| 5. 환경정책/식물보호/동물보호 .....        | 72 |
| 6. 동물위생 .....                  | 74 |
| 7. 농촌지도 .....                  | 76 |

빈

면

## I. 주요농업시책

### 1. 협동농장의 해체와 합리적 해결

(Bundesminister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informiert」, 014-0805, 91.12.3.)

199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협동농장(LPG'en)의 해체—그 합법적인 해결을 보장함

이 조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올해 말까지 새로운 회사 형태로(Gesellschaftsform)로 전환되지 않는 협동농장(LPG'en)은 1992년 1월 1일자로 해체된다.

그로 인해 내년 초에 동독 농업이 매우 불리해질 것이라는 의구심은 정당하지 못하다. LPG의 재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서 생길수도 있는 잉여금을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하였다면, LPG는 그 사무 처리를 종결해야만 한다. LPG와 그 조합원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 또한 제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는 그때까지 완전히 존속된다.

만일 LPG-조합원이 LPG의 해체로 인해 실업자가 된다면, 그는 실업보험(Arbeitslosen versicherung)에 의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50세 이상인 농업노동자는 추가로 적응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밖에도 실업자가

된 LPG-조합원은 직업알선조치(Arbeitsbeschaffungsmaßnahmen)를 통해 도움을 받거나 직업적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직원을 받을 수도 있다.

LPG의 전환에 대한 期限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1년이전에 통지되어진다. 원래 4,000개였던 농업생산협동조합의 3분의 1이 그들의 기업을 미래의 법적 형태(Rechtsform)로 전환시키기 위해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 농업적응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을 개정하기 위한 시안(interfraktionelle Gesetzesinitiative)은, 기업의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Lerterlagen)를 기한 내에 관할 등기재판소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적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LPG의 신청서가 수리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불충분한 증빙서류는 그 후 즉시 추가로 제출되어야 한다.

### 1-1 LPG의 해체와 사회보장

새로운 법적형태(Rechtsform)로의 전환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규정에 따라 소재지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에 신고하지 못한 협동농장은 농업적응법의 제69조 제3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필요한 증빙서류가 적시에 제출되지 않는다면, 그 신고는 적법하지 못하다. 물론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한 LPG는 적응법 시안(interfraktionelle Gesetzesinitiative)에 의거해 이 증빙서류를 즉시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만 한다.

LPG를 청산할 경우에는 LPG의 사무를 정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LPG가 계속 존속하며, 재산 이용이 끝날 때까지 존속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무 처리에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다. 더우기 LPG-재산의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의 성립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속한다.

- 건물과 기계의 정리와 수리
- 종자와 비료의 구입
- 경작의 계속



— 수확

— 규정대로의 가축사육과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의 가축 판매

— 법적인 해지통고기한(Kündigungsfrist)에 유의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함

이러한 일들은 농경지(Landwirtschaftliche Nutzfläche)를 소유권자에게 최종적으로 반환할 때까지 행해질 수 있다.

청산된 LPG 조합원들을 위한 사회보장은 고용촉진법(Arbeitsförberangsgestez)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책들이 준비된다.

— 실업수당(Arbeitslosengeld)/실업보조금(Arbeitslosenhilfe)

— 취업알선조치를(Arbeitsbeschaffungsmaßnahmen)에 참여함

— 직업적 자격 획득을 지원함

— 55세부터의 은퇴 이전 보조금(Altersübergangsgeld)

— 50세부터의 농업노동자들을 위한 추가 적응보조금이 유럽공동체의 과제인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금에서 지급된다.

하나의 LPG가 해체될 때의 사회적 완충조치(soziale Abfederung)가 사회정책(Sozialplan)에 우선할 수도 있다. 물론 그렇기 위해서는 LPG안에 경영협의회(Betriebsrat)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 경우에 이사회(Vorstand)는 기업이 계획된 휴업에 들어가기 전에 경영협의회에 그들의 의도에 관해 포괄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 거기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노사협약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존재한다.

## 1-2 청산인의 임명과 면직

### (Bestellung und Abberufung der Liquidatoren)

총회가(Vollversammlung) 다른 기관에게 청산의 임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청산은 LPG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총회는 LPG의 최고 기관(höchstes Organ)으로 존재하며, 청산인은 총회의 결정을 따라야만 한다.

소수 집단(Minderheiten)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할 등기재판소에 다른 청산인의 임명을 제안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최소한 LPG조합원의 1/10이 중요한 근거를 진술함으로써 이 제안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것은 청산인을 면직시키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총회에서 선출된 LPG 재심위원회도(Revisionskommission der LPG)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등기재판소에 청산인 임명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 위원회는 청산인을 잠정적으로 면직시킬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특히 LPG가 청산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위험에 빠졌을 때 정당화된다.

### 1-3 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그가 위임받은 일들은 완수하기 위해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무집행자(Geschäftsleiter)를 채용해야만 한다. 청산인의 주요 임무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속한다.

- 현행 거래의 종결
- 지불기한의 된 채무의 변제
- 만기가 된 청구권들의 회수
- LPG 재산의 매각
- 혹시 생길 수 있는 잉여자산(Überschuß)을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함.

청산인은 LPG재산을 매각할 때 조합원의 구매신청(Kanfangebote)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 일에는 재산이 되는 물건을 평가액(Schätzwert)으로 구입하거나 최소한 조합원들의 선매권(Vorkaufsrecht)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1-4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

만일 청산인이 자기의 주의의무(Sorgfaltspflicht)를 위반한다면, 그는

그 일로 인해 조합에 발생한 재산손실(Vermögensnachteile)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 일이 소송문제가 된다면, 청산인은 그가 주의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한다.

청산인은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는 근거가 제시된다면, 관할 주 농림성(Landwirtschaftsministerien)은 농업적 응법에 근거하여 LPG의 사무처리(Geschäftsführung)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 1-5 결론(Fazit)

농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데 필요한 법치국가적 기본조건을 구동독 지역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LPG의 전환에 대해 입법기관이 정한 기한이 필수적이다. 이 기한의 연장은 동독 농부들에게 다만 이익보다 손해를 더 많이 끼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은 계속 늦춘다면 농민의 재산과 세금이 전통적인 제도(Überkommene Strukturen) 속에서 낭비될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를 끝내는 것이 필연적이다.

실질적으로 미래적인 기업계획안(Unternehmenskonzept)을 제출할 수 있는 협동농장은 기한 때문에 방해로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시안(interfraktionelle Gesetzesinitiative)은 기업의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법적 형태로 전환한다는 LPG의 신청사가 수리된다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증빙서류는 그 후에 즉시 추가로 제출되어야 한다.

1992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LPG 해체의 법적 처리에 관한 광범위한 참고자료들이 독일연방식량부(Bundesernährungsministerium)의 특별판“농업 상담 자료(Ratgeber Landwirtschaft)”로 작성되며, 그곳에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

## 2. 농업분야에 있어 기업형태

(BFELF : 「informiert」, -14-0805, 91.8.7.)

### 구동독지역 농민들을 위한 개관

LPG의 구조적 적응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업(Landwirtschaftliche Betriebe)을 재조직하는 일도 미래의 경제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특히 다음과 같다.

- 업무집행(Geschäftsführung)에 있어서 기업의 유연성,
- 清算의 문제점,
- 기업 채무에 있어서의 책임한계,
- 국가의 지원자금(Fördermittel)사용
- 업무집행의 의무(Geschäftsführungspflichten),
- 조세상의 장점과 단점”.

이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다음의 설명은 기업행태에 대해 중요한 기본 정보와 몇 가지 특별한 지원 가능한 방법들(Förderungs möglichkeit)에 한정되어 있다. 올바른 결정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도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 2-1 개 관

새로 제정된 농업적응법은, 모든 LPG와 협동 조직들이 법에 의한 해체를 피하려면 199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 또는 물적회사(Kapital gesellschaft)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새로운 회사는 전체로서 또는 부분적으로 LPG의 권리계승자가 되며, 이때 실질 재산이 그대로 유지

---

1) 이 문제에 관해 다음에 발행될 보고서는 특히 농업에 있어서의 조세를 다룰 것이다.

된다. 물론 채무도 이전되어야 한다.

각각의 토지 소유권자와 앞으로 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LPG의 각각의 참가자들은 그의 기업을 어떤 법적 행태(Rechtsform)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법적 행태를 결정하기 전에 어느경우에나 어떤 조치를 취하여 기업의 경제성을 보장해야만 하는가 하는 비판적 분석이 행해진다. 특정한 기업 행태를 선택함에 있어서 농업기업가들은 개별적으로 농촌지도를 받고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 청산 관계(Liquiditätsverhältnisse)
- 재정적인 가능성(Finanzierungsmöglichkeit)
- 지원받을 가능성(Förderangsmöglichkeiten)
- 이익배당(Gewinnbeteiligung)과 손실배분(Verlustbeteiligung)
- 조세부담
- 기업자격(Geschäftsbefugnisse), 대표자격(Vertretungsbefugnisse), 관리자격(kontrollbefugnisse)
- 법적 형태에 고유한 요건들, 계산서 발행의 의무(Rechnungslegungsverpflichtungen), 감시의 의무(Prüfungsverpflichtungen), 공개의 의무(Publizitätsverpflichtungen)
- 책임 관계(Haftungsverhältnisse)
- 회사의 정관(Gesellschaftsverträge)을 만들 가능성
- 주권의 양도가능성(Übertragbarkeit der Beteiligungen)
- 파산신청의 의무(Konkursantragspflicht)

원칙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민법에 따른 다음의 기업형태가 가능하다. 이것은 농장소유자(Betriebsinhaber)의 신분에 따라 자연인으로 된 기업(Betriebe natürlicher Personen) 또는 법인으로 된 기업(Betriebe juristischer Personen)으로 분류된다.

- 자연인 기업(Betriebe natürlicher Personen)
  - 농업의 지배적인 기업형태로서 개별기업(가족기업)
  -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en)

-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GbR)<sup>1)</sup>
- 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
-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 법인 기업(Betriebe uristischer Personen)
- 물적회사(kapitalgesellschaften)
- 유한회사(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AG)
- 등록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eG)<sup>2)</sup>
- 자연인 기업과 법인 기업이 혼합된 형태
- GmbH & Co. KG(유한회사와 주식회사)

## 2-2 특수한 기업 형태

### 가. 가족농기업(개별기업)

Landwirtschaftliche Familienbetriebe(Einzelunternehmen)

기본적 특징 :

- 기업적 독립성이 크다
- 유럽공동체와 독일내에서 농업정책 촉진 조치들의 주요 목표집단이다.
- 기업적 위험부담을 완전히 진다.(무한책임)
- 기업관리자(Betriebsleiter)의 전문적이고 기업적인 능력이 크게 요구된다.
- 시장과 생산조직에 대해 고도의 신축성을 가진다.

전형적인 가족농기업에서는 :

- 기업활동과
- 노동이 농장소유자와 그의 배우자 및 가족에 의해 수행된다.

---

1) 민법상의 회사

2) 사법상의 이런 기업들 이외에도 공법상의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은 교회 시설의 형태나 공법상 재단법인의 형태 또는 지역(Gebietskörperschaften) 등등의 형태를 가진 기업들이다.

이 가족은 그들의 기업적 결정을 내릴 때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가족은 기업적 위험을 완전히 부담하며(무한책임의 의무를 진다), 그럼으로써 투자의 재원을 마련할 때나 청산상의 애로점들을 극복할 때에 신용평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

기업목표는 지속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익은 가족 농업노동력의 댓가이며 자기자본의 댓가이고, 기업적 위험의 댓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익은

- 소비되고
- 저축되거나 또는
- 기업 내에 투자된다.

LPG 조합원에게는 대체로 농업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LPG에 속한 조합원자격을 제때에 해지통고하고 재산정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LPG의 舊채무(Altlasten)에서 확실히 면제될 수 있다.

#### 나. 인적회사(소규모 협동회사)

Personengesellschaften(Kleinere Kooperationen)

전형적인 특징 :

-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가들의 결합을 의미한다.
- 전문화와 협동을 통하여 기업경영적 장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 비영업적 농업 기업(als nicht gewerbliche Unternehmen der Landwirtschaft)으로서의 조건들을 엄수한다면 가족기업(Familienbetrieb)처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기업 위험을 안고 있다(회사의 각 구성원이 연대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인적회사는 특히

- 부자회사(Vater-Sohn-Gesellschaften) 또는
- 기계이용조직(Maschinengemeinschaften) 및 자회사조직(Betriebszweiggemeinschaften)과 같이 몇 명의 농부들로 구성된 소규모 협동회사

(Kleinere Kooperationen)에 적합하다.

인적회사는

- 사원 사이의 높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며
- 최소한 2명의 발기인(Gründer)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업적 행위능력(unternehmerische Handlungsfähigkeit)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원 숫자이다.

농업적응법에 따른 창업의 기회로서 LPG 조합원에게는 2가지 창업 방식이 있다.

- LPG를 분할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LPG의 권리계승자)또는
- 기업의 발기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LPG의 재산을 획득하거나 임차하여 후속 인적회사를 설립하면서 LPG를 탈퇴하는 방법(권리계승에서 제외됨(Rechtsnachfolgeanschluss)).

인적회사의 창업이 선호되는 것은

- 기업적 위험을 보다 잘 분배할 수 있고,
- 청산을 안전하게 하며 신용공여(Kreditfähigkeit)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킬 수 있고,
- 기업자산(Betriebsmitteln)을 구매할 때와 생산물을 판매할 때 회사의 시장입지(Marktposition)를 강화시킬 수 있고,
- 미래를 위한 상속 규정(Erbregelung)을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GbR)

가장 흔한 회사형태이면서도 농업이 요구하는 바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가 GbR이다. 이것의 특징은

- 공동의 업무집행(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정관에 따라)
- 연대책무자로서 각 개인이 인적(무한)책임을 진다.(이로 인해 신용도가 높다)
- 국가의 장려조치들을 완전히 받는다.



- 정상적인 농업 개별기업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된다.
- 비교적 창업이 간단하고 정관 작성이 자유롭다.

## (2)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대개 사원(Gesellschaften)의 숫자가 보다 많은 특수한 형태의 인적회사이다. 사원들은 그들의 책임과 업무집행권한의 형태에 따라서 나뉘는데, 무한책임을 지며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합자회사 사원인 무한책임사원(Komplementäre) 능동적 사원(akziver Gesellschafter)과, 사원으로서의 책임이 그들의 출자재산(Einlagevermögen)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며 다만 연말대차대조표(Jahresbilanz)에 대한 정보권(Informationsrecht)과 감시권(Prüfungsrecht)만을 가지는 유한책임사원(Kommanditisten)과 수동적 사원(passiver Gesellschafter)으로 구분된다.

이 법적형태(Rechtsform)에서는 이익분배가 자본참가 상황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합자회사는 인적회사의 측면—완전한 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을 제한받지 않는 사원(무한책임사원 komplementäre)과 행위와 책임이 제한되어 있는 사원(유한책임사원 Kommanditister)의 형태로 된 물적회사의 요소들을 결합시킨 것이다.

합자회사와 합명회사(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는 주로 상업적 기업(Handelsunternehmen)의 법적행태로서 이용되고 있다.

## 다. 물적회사(법인)

물적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회사의 설립(Gründung), 입회(Zulassung), 최소한의 회사자본(Mindestgeschäftskapital)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 기업의 위험이 회사자본에 의한 책임한정에 따라 명확이 규정되고,
- 사원총회(Gesellschafterversammlung),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Aufsichtsrat), 업무집행인(Geschäftsführer)(업무집행인은 사원이 아니

- 어야 한다)등의 특별 기관이 있고,
- 조세법의 의미에서 볼 때 영업기업(Gewerbebetrieb)이며,
  - 인적회사에 비해 자본조달이 어렵고,
  - 기장의무(Buchführungspflichten), 결산의무(Abrechnungspflichten) 및 결산공고의무(Offenlegungspflichten)가 명시되어 있고,
  - 안정된 설립자본금(Grund- bzw. Stammkapital)이 있어야 한다.

### (1) 유한회사

법률적인 토대는 유한회사법이다. 기본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고,
- 공증받은 회사정관이 있어야 하며,
- 상업등기부에 등기해야 할 사항은
  -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 및
  - =설립자본금(Stammkapital)의 액수(최소 50,000마르크)이다.

유한회사는 최소한 1인 이상의 업무집행인(Geschäftsführer)을 임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업무집행인이 사원일 필요는 없다.

유한회사의 본질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재정적인 책임은 회사재산(Gesellschaftsvermögen)에 대해서 한정되고,
- 1인 이상의 업무집행인이 대표권(Vertretung)을 행사하기 때문에 기업의 신축성이 크다.

사원들의 이익배당(Gewinnanteil)에 대해 과세할 때에 그들의 지분에 따른 이익에 조세부과를 유보시킨 법인세(Körperschaftsteuer)는 사원들 자신의 소득세에서 선불한 것으로 간주된다.

### (2) 주식회사

주식회사법이 그 법적 토대가 된다. 본질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발기인은 최소한 5명이어야 하고,

- 주식회사법에 따라 작성된 정관은 공증과 등기를 해야 하며,
- 최소자본금(Mindestnennkapital)은 50,000마르크이며,
-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식을 발행하며.
- 창립시의 경비와 비용이 많이 든다.

주식회사는 업무집행기관(Geschäftsleitung)에 의해 경영되고 대표된다. 업무집행기관은 사원총회(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기관인 監事(Aufsichtsrat)에 의해 임명되고 감독을 받는다.

주식회사는 물적인 기업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바뀌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주주는 그의 주식(기업의 자본금(Grundkapital)에 대한 권리)을 시장가격으로 폐쇄 시장 또는 공개 시장에서 거래한다.

자기자본(Eigenkapital)의 증자는 신주나 사채(Schuldverschreibungen)의 발행을 통해 하는 것이 비교적 손쉽다.

조세부과는 회사(Gewerbebetrieb)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행해진다.

## 라. 등록조합

- 회사의 책임은 회사자본(조합지분)에 한정된다.
- 조합원의 책임은 대개 정관에 정해진 조합원의 사원권(Geschäftsanteile)에 한정된다.
-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조합원의 생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 회사의 대표권은 이사회(Vorstand)가 수행한다. 이사회에 대한 감독은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Aufsichtsrat)가 행한다.
- 모든 조합원의 발언권(Mitspracherecht)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서는 기업의 신축성을 방해한다(모든 조합원은 그의 자본참여 범위에 상관없이 총회에서 오직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LPG에서 변경되어 생겨난 기업에 대해서는 1993년까지 조세법상의 영리기업(Gewerbebetrieb)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등록조합의 법률적 토대는 조합법(Genossenschaftsgesetz)이다. 등록조합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최소한 7명의 발기인(Gründungsmitglieder) 조합원과,
- 정관을 결의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 =이사회 : 최소 2명의 이사(업무집행기관(Geschäftsführung))
  - =감사 : 최소 3명의 감사(업무집행기관을 감독함)
- 조합등기부에 등기하고,
- 검사인(Prüfungsverband)을 통해 기업을 검사할 의무가 있고,
- 조합원의 교체가 가능하며,
- 우선적으로 조합재산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관에 따라 그 이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추자불입의무 Nachschußpflicht).

입법기관에서는 등록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는 LPG에 대해서 경과 기간동안의 조세경감을 승인하였다.

조합원에게 분배된 이익배당(Gewinnenteile)에 대해서는 소득세(Einkommensteuer)가 부과되며,

이때

-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및
- 자본소득세(Kapitalertragsteuer)도 부과된다.

조합원자격의 해지를 통고할 때 대개 사원권(Geschäftsanteile)만이 지분되지 때문에 비밀준비금(stille Reserve)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등록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Generalversammlung)는 대체로 1년에 한번 감사(Aufsichtsrat)가 소집한다. 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준비되고 소집되는 총회에서 이사회(Vorstand)와 감사(Aufsichtsrat)는 조합원들에게 업무진행상황(Geschäftsverlanf)의 기본적 측면들에 관해 보고해야만 하며 손익배분(Gewinn oder Verlustverteilung)에 관해 제안해야만 한다. 등록조합의 총회는 물적회사의 회사총회(Gesellschaftsversammlung)로서 그 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명백히 다른 기관에 할당되지 않은 전체적인 사안(Angelegenheiten)은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

등록조합은 그 기업형태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적 요구에 적응하기가 비교적 어렵다.

## 마. 법적형태와 촉진정책의 가능성

### (Rechtsform und Förderungsmöglichkeiten)

농업기업은 광범위한 국가의 투자촉진 프로그램에 의하여 시장에 적합하고 환경에 적합한 농업생산을 추구하며 또한 적절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야만 한다. 그 투자촉진프로그램에는 일정한 기준에 맞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일정한 투자촉진상한선(예를 들어 가족두수와 소득정도)외에도 법적형태가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농(Bäuerlicher Familienbetrieb)이 신설됨으로써 형성된 농업기업은 가족농의 재조직과 근대화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또한 이것은 人的會社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투자촉진상한선은 대체로 개별기업(Einzelbetrieben)에 비해 3배가 된다.

LPG가 등록조합이나 물적회사 또는 인적회사로 전환됨으로서 형성된 기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투자촉진가능성들이 제공된다. 그밖에도 LPG의 권리계승자는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의 舊채무면제조치(Altschuldentlastung)를 통한 지원을 받고, 신용을 공여하는 은행과 재정상태 개선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지원을 받는다.

법적형태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유럽공동체와 독일연방공화국의 농업구조조정촉진정책(Agranstrukturförderung)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족농이라는 점이다. 법인에 있어서 그 경제력 때문에 국가 지원이 필요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다. 구동독 지역 농업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법인 기업들도 일정 기간 동안은 국가 지원을 받는다.

## 2-3 결 론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적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이행하면서 구동독 지역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구조와 조직형태에의 적응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특히 LPG에 관계되어 있다.

동유럽 농업구조의 특징은 가족농(Familienbetriebe)이다. 협동조합은 대개 조달부문(Beschaffungsbereich), 가공부문(Verarbeitungsbereich),

출하부문(Vermarktungsbereich)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법적형태를 선택하는 일은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기업적 결정이다. 어떤 법적형태가 기업의 목적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는 人的·법률적·조세법적 결정기준(Entscheidungskriterien)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데, 반드시 기업 창업시에만 제기되지는 않는다. 나중 시점에서조차 법적형태의 변경은 변화된 조건에 대해 기업이 필수적으로 또는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한 적응이 될 수 있다.

국가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조직형태(Organisationsform)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기관은 전체 사회의 복지에 대해 그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기본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 가족에 적합하고 환경에 적합하며
- 품질지향적인 농업생산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에 부수된 가족사육을 하는 가족농이 이런 요구에 특별히 적합하다.

농업에서 공동체적인 생산형태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경쟁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언급된 모든 법적형태들에 있어서 참가자들은 계약을 맺을 때에 나중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들을 미리 확인해야만 한다. 이것은 특히 공동체적 토지이용과 자본조달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다른 어떤 상황으로 사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업법과 조세법의 복잡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예를 들자면 직업별 조직들, 경제상담가와 조세상담가, 변호사, 또한 농업서적과 농업전문가의 주요협회(HLBS)와 독일농업협회(DLG)가 상담을 해 줄 수 있다.

구동독 지역의 관련 농민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만 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조언은 기업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3. 구동독지역의 경지 재편성

(BFELF, 「informiert」, 014-0805, 91.7.16)

#### 3-1 개 관

구동독 지역의 경지를 재편성하지 않고서는 새로이 형성된 능률적인 기업들이 농업을 합법적으로 계속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

농업적응법을 개정함으로써 경지재편성의 절차를 촉진시키고 단순화하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중요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잠정적인 점유권 규정 : 이 규정에 따라서 경지재편성(Flurnenordnungsbehörden)담당 관청은 토지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농가들에게 경작에 필요한 최종적인 소유권 재편성이 있을 때까지 토지를 잠정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 소유권자의 권리 보호 : 왜냐하면 이 규정들은 이제부터 경지정리법에 상당하기 때문이다.
- 공동의 移住담당기업과 다른 적당한 관직에 경지재편성 절차를 위임할 가능성
- 토지정리절차를 포괄적인 농업구조 재편성을 위한 경지정리로서 계속할 가능성

#### 3-2 새로운 규정

##### • 잠정적인 점유권 규정

농가들에게 확실한 경지를 빨리 제공해 주기 위해 경지재편성 담당 관청은 토지정리절차에 참여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경작하기 위한 토지를 잠정적으로 할당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규정들이 관계자들에게 불리할 정도로 지연될 때에 그렇게 한다. 이 잠정적 점유권 규정은 토지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곳의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부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또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될 수 있다.

- 소유권(Eigentumsrecht)과 점유권(Besitzrecht)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이 적용된다.

- ① 경지를 재편성하여 가장 최선의 경작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러므로 소유한 경지 외에 현재 맺고 있는 임대차관계와 앞으로 맺을 예정인 임대차관계도 재편성할 때 고려된다. 모든 관계자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 즉, 반입했던 경지와 경작을 위해 할당된 경지는 일정한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 ② 할당된 점유토지의 경계를 구분해야만 한다. 물론 이 일은,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잠정적 점유권 규정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야 한다. 재편성된 모든 토지를 측량하여 경계를 표시하는 일은 토지정리절차를 종결하기 위한 토지정리계획안(Bodenordnung-splan)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잠정적 점유권 규정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이 규정은 토지정리계획안에 따라 확정적인 소유권 재편성이 이루어지면 폐지된다.

#### • 잠정적 점유권 규정에 관련한 임의의 토지교환

모든 관계자들이 동의하면 잠정적 점유권 규정은 경지정리법에 따른 임의의 토지교환으로서도 계속 시행될 수 있다. 그 장점은 관계자들이 재편성된 재산에 관해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명을 빨리 얻을 수 있고 토지계획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 경지정리로서의 토지계획 수행

토지정리절차(Bodenordnungsverfahren)는 경지정리법에 따른 처리 절차로서 계속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관계에 관한 규정을 넘어서 농촌 마을들과 경작지의 농업구조와, 하부구조 및 생태학적 구조를 새로이 형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계속 시행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경지정리는 농가들의 생산조건과 경쟁력을 개선시키는 일을 도울 뿐만 아니다, 동시에 농촌의 일반적 생활조건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를 들자면, 경지정리절차 안에 교통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취락구조개선을 위한 조치, 여가시설과 휴양 시설을 만들기 위한 조치 및



경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통합될 수 있다.

### 3-3 국가의 지원(Staatliche Förderung)

소유권관계를 확정하고 재편성하기 위한 절차에 드는 비용은 독일연방의 주들이 부담한다.

도로 건설, 수로건설(Gewässerbau), 또는 취락구조개선 등의 추가 조치는 유럽공동체의 과제인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을 위한 자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동독 지역에 대해서는 더 나은 지원 조건들이 적용된다.

— 경지정리조치들에는 9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 취락구조개선조치들에는 투자 비용에 대해 보조금이 아래와 같이 지급된다.

= 공공의 조치들에는 최대 80%까지

= 개인적인 조치들에는 최대 50%까지.

그밖에도 유럽공동체의 사업인 “동독편입”에 따라 취업알선조치들(Arbeitsbeschaffungsmaßnahmen)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 3-4 관할권과 실행

주의 관할 관청에 신청한다.

소유권관계를 확정하고 재현하는 일은 주의 농업부와 그 하위 관청이 관할한다. 토지소유자와 경작자는 해당 업무관장 부서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정리에 관한 신청서도 그곳에서 수리한다.

#### • 공공의 移住담당기업에 위임함

주는 공공의 이주담당기업과 다른 적절한 기관에(예를들면 공적으로 임명된 측량기사들) 소유권관계를 확정하고 재편하기 위한 절차의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절차의 처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경지재편성 관청은 부담을 덜어야만 하고, 동시에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경지재편성을 담당한 국가 기관은 토지정리를 실시하기 전에 토지교환계획안과 토지정리계획안을 조사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규정(Anordnung)을 만들어만 한다.

소책자로 만들어진 토지재편성과 경지정리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Auswertungs- und Informationsdienst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AID), Postfach 20 01 53, 5300 Bonn<sup>2</sup>로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다.

## 주(洲)의 관할관청

### A. Brandenburg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Referat Flurneuordnung und Dorferneuerung

Heinrich-Mann-Allee 107

O-1561 Potsdam

Ämter für Agrarordnung :

Region Havelland/Kurmark

in Brieselang

Region Prignitz/Ruppin

in Neuruppin

Region Fläming

in Schlieben

Region Uckermark/Oderbruch

in Bad Freienwalde

Region Neumark

in Frankfurt/Oder

Region

Niederlausitz/Spreewald

in Cottbus

### B. Mecklenburg-Vorpommern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ischerei  
Paulshöher Weg 1  
O-2786 Schwerin

Ämter für Landwirtschaft in  
Schwerin(Sitz Hagenow),  
Rostock und Neubrandenburg

#### **C. Sachsen**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Ernährung und Forsten  
Freiberger Straße 31  
O-8010 Dresden

Ämter für ländliche Neuordnung in Dresden,  
Chemnitz und Leipzig

#### **D. Sachsen-Anhalt**

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Olvenstedter Straße 1-2  
O-3010 Magdeburg

Ämter für Landwirtschaft und  
Flurneuordnung  
in Bernburg, Magdeburg, Halle,

Wittenberg, WeiBenfels, Stendal,  
Wernigerode und Salzwedel

## **E. Thüringen**

Ministerium für Landwirtschaft  
und Forsten des Landes Thüringen  
Hallesche StraBe 16  
O-5024 Erfurt

Flurneuordnungsämter in Erfurt,  
Gera and Meiningen

## **공공의 이주 담당기업**

## **A. Brandenburg**

Brandenburgische Landgesellschaft mbH  
Rosa-Luxemburg-StraBe 40  
O-1591 Potsdam

Niederlassungen in Cottbus und Frankfurt/Oder

## **B. Mecklenburg-Vorpommern**

Landgesellschaft Mecklenburg-Vorpommern mbH  
An der Chaussee 28  
O-2711 Schwerin-GroB Medewege

Außenstellen in Greifswald-Eldena und Neubrandenburg

**C. Sachsen**

Sächsische Landsiedlung GmbH  
Talstraße 8  
O-8060 Dresden

**D. Sachsen-Anhalt**

Magdeburger Landgesellschaft mbH  
Große Diesdorfer Straße 56-57  
O-3031 Magdeburg

Hallesche Landgesellschaft mbH  
Fichtestraße 6  
O-4203 Bad Dürrenberg

**E. Thüringen**

Thüringer Landgesellschaft mbH  
Spielbergtor 12 d  
O-5010 Erfurt

## 4. 협동농장의 구조혁신 촉진시책 (BFELF, 「informiert」, 014-0805, 91.1.31)

연방과 주들은 1991년 1월 23일에 농업 기업의 구조를 법인 형태로 변경하기 위한 촉진정책의 원칙들을 의결했다. 이 원칙들에 의해 협동농장을, 농민적 특징을 가지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생산을 하는 농업 기업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 촉진책의 주요 요소들은

-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합리화조치들(비용절감 Kostensenkung)
- 환경에 맞는 식물의 생산과
- 토지에 알맞고 종에 알맞는 가축의 사육과
- 시장 요구에의 적응이다.

전제조건으로는 위생개선계획안과 발전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재산분배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 4-1 효율적인 투자촉진

LPG'en을 경쟁력이 있으며 환경에 조화되는 기업으로 구조를 혁신하는 일은 특별한 투자촉진계획의 지원을 받는다.

투자금액의 규모는

- 전업농당 143,000마르크까지 이르며
  - 그러나 매 기업 당 250만 마르크가 최대액이며,
- 이때 최소한 10%의 자부담을 부담해야만 한다.

이 촉진정책은

- 최대로 225만 마르크까지 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Kapztalmarktdaehlen)에서의 대부예 대해 5%까지 이자를 경감해 주는 것이다. 이자를 경감해 주는 기간은 10년까지이다.
- 이밖에도 주거지를 이전할 때의 개발조치들(도로건설, 배수작업 등)을 위해 비용의 25%까지(최대 10만 마르크) 보조금을 줄 수 있다.

- 또한 그밖에도

- 투자금액범위에 항상 따르는 지도감독비와
- 위생개선계획안(Sanierungsplan)과 발전계획안(Entwicklungsplan)을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의 6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정부측에서 25% 이상의 자본참여를 한 국유재산 권리계승자(Volkseigene Güter)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4-2 경제와 환경에 유익한 포괄적인 지원의 가능성

##### 가. 지원 목록

- 합리화를 위한 투자(Rationalisierungsinvestitionen)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화를 위한 투자자금(노동력의 축소, 생산비 절감)이 지원될 수 있다. 이때

- 비경제적인 농장들을 해체해야 하며
- 식물의 생산과 가축 생산을 결합시켜야 하며
-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잘 대처할 수 있는 경영단위(Betriebseinheitlen)를 창설해야만 한다.

우선적으로 투자가 장려되어야 하는 곳은

- 식물 생산 부문에서는
  - =식물보호제와 비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하며 또한 액체비료를 살포하는데 필요한 기계와 도구들의 현대화와
  - =토지를 보호하는 토지경작과
  - =수확시의 손실과 저장시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고
- 가축 생산 부문에서는
  - =환경에 미치는 부담의 감소내지 제거와
  - =동물보호의 개선과 식품위생의 개선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 에너지에 관한 조치들(Energiemaßnahmen)<sup>1)</sup>

환경을 보호하여 비용이 절약되는 에너지의 이용을 뒷받침하고, 에너지로 인한 환경부담을 빨리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 에너지 절약과
- 연료 전환을 위한 조치들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소득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들 또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곳은

- 직접출하(Direktvermarktung)와
- 여가와 휴양을 위한 부문에 필요한 투자 자금이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이런 활동이

- 농장내의 건물에서 이루어지며
- 농업 기업이 시장 발전에 적응하는 것과 일치하며
- 협력자에게도 일정한 소득이 기대되어야 하는 점이다.

• 위생개선계획안(Sanierungspläne)

위생개선획안과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지도감독비도 이 촉진 조치에 관련될 수 있다.

## 나. 개별 부문에 대한 투자촉진

가축사육에 대한 투자는

-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액체비료를 최소한 6개월간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 목표 연도에 농경지 매 헥타아르당 2.5 마리(GVE)의 가축두수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 젖소 사육

투자가 촉진되는 경우는

---

1) 이밖에도 구동독 지역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과 연료 전환을 위한 조치들을 특별히 장려하는 시책들도 있다.

- 구조개혁이후 30%이상의 연작초지(Dauergrünland)와 50%이상의 주료사료경작지(Hauptfutterfläche)가 있는 경우(개별적으로는 예외가 가능하다)와
- 가축두수가 증가하지 않고, 생산 증가도 없는 경우와
- 현재의 잠정적인 우유할당기준량의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참조물량의 할당은 이 투자촉진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쇠고기 생산

투자 촉진의 조건이 되는 것은 계획연도(Planungszeitraum)의 末에 육우의 총 두수가 사료경작지 매 헥타아르 당 3GVE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다.

#### • 돼지사육

여기서 투자 촉진을 받으려면

- 돼지사육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저장하고
- 최소한 돼지사료의 35%를 자체농장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 • 달걀과 가금

달걀생산과 가금생산 부문에서는 환경보호와 동물보호를 위해 국가가 정한 명령을 충족시키는 투자가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투자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축사 신축은 제외된다. 다만 젖소사육으로 전환한 암송아지사육농가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 보통 매 농가당 젖소외양간이 120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주택에 대한 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여기가 휴양을 위한 영역으로 농장의 일부를 개조하는 것은 예외이다.
- 관리사무소에 대한 투자는 제외된다.
- 가축구입은 제외된다.
- 토지구입도 제외된다. 그러나 洲에 따라서는 개별적인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排水와 초지개간(Grünlandumbruch)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4-3 투자지원의 전제조건

지원자금(Fördermittel)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생개선계획안과 발전계획안 등이 요구된다.

이때 이 계획안들은

－ 당시의 농장 상황에 대한 자료들을 제시해야 하며

－ 농장해체(Entflechtung)와 재조직(Neuorganisation)을 고려해야 하며

－ 최소한 농장을 인도할 사람이 직업적 소양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실증해야 한다.

그밖에도

－ 검사를 받은 DM표시 신뢰계년도 대차대조표와 광범위한 재산분배(Vermögensaufteilung)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4-4 전 망

법인 형태를 갖춘 농업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이미 지난 연말에 결정되었던 주업농업농가를 재조직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특별계획(Sonderprogramm)은 구동독 지역의 농업을 위해 중요한 조치들이다. 이러한 특별조치들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농가들이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를 갖춘 농업으로의 발전을 뒷받침한다. 농업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의 정착이 증가하는 것은 농촌 마을들과 자연의 매력을 재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촉진의 원칙들을 실행하는 일은 구동독 지역의 각 주의 관할권에 속한다. 주는 시행규칙(Durchführungsbestimmungen)들을 공고할 것이고, 허가관청들(Bewilligungsstellen)에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에 관한 일을 처리하도록 위임할 것이다.

## 5. 구동독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적응보조금 (BFELF, 「informiert」, 014-0805, 91.3.28)

구동독지역에 적응보조금(Anpassungshilfen)과 立地관련 추가보조금(Zuschlägen)으로 8백만 DM이 조기에 지급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농업을 위해 총 12억 마르크를 적응보조금(Anpassungshilfen)과 입지관련 추가보조금(Standertbezogene Zuschläge)으로 책정한 1991년 연방예산 중에서 그 예산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단기적으로 8백만 마르크를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 것은

- 구동독 지역의 농업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清算上의 문제점들(Liquidationsprobleme)을 가지고 있고,
- 과거의 협동농장들(LPG'en)의 구조혁신(Umstrukturierung)을 우선 부분적으로 완료했으며
- 불철 영농자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금액 중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 총 8백만 마르크 중에서 4백만 마르크는 급격한 가격하락(Preisbruch)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응보조금 및 농업과 내수면어업(Binnenfischerei)을 하는 기업들의 지불능력(Zahlungsfähigkeit)을 보장하기 위한 적응보조금으로
- 총 4백만 마르크는 입지관련 추가보조금으로 준비되었다. 이 두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1991년 4월 15일까지 해당 허가 관청(Bewilligungsbehörden)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적응보조금을 위해 책정된 나머지 자금은 연방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보다 엄격한 보조금 할당 기준에 따라 늦여름에 지급될 것이다.

### 5-1 적응보조금에 대한 간단한 처리지침

- 적응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 개별기업(주업농가와 부업농가)

— 人的會社(Personengesellschaften)

— 협동조합과 기타의 社團(Körperschaften)으로서 이들은 농업에 이용되는 경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내수면어업에 종사한다. 그밖에 신청자는 구동독 지역에 자기 농장이 소재해야만 한다.

• 이 장려책에서 제외되는 자

— 국유재산과 국영기업의 권리계승자

— 신청 시점에 소유 재산에 대한 파산(Gesamtvollstreckung)이 통지되었거나, 제안되었거나 또는 해체가 진행중인 기업과

— 연간 개략적인 노동수요(Arbeitsbedarf)가 500시간 이하인 기업으로서, 이것은 대가 家計(Hanswirtschaften)에 관계된다.

적응보조금의 한도는 개략적인 노동소요량에 따라 정해진다. 이 노동소요량은 토지이용을 하는 경지(Flächen)와, 가축사육의 경우 가축두수를 평균적인 노동수요치(Arbeitsbedarfszahlen)로 곱해서 계산된다. 노동수요치는 생산에 관제된 노동만을 고려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입지조건과 생산방법, 경지의 규모, 가축두수 규모에서 나온 평균치이다. 내수면어업에 대해서는 고용된 노동력단위(Arbeitskrafteinheiten)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적응보조금의 총 금액은

— 기초금액(Grundbetrag)과

— 추가금액(zusätzlicher Betrag)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금액은 소액의 혜택을 받는 농가에게 최소 1,250 마르크를 지급하며(개략적인 노동수요가 500시간일 때) 매 농가 당 최대로 5,000마르크가 정해진다. 이 최고 금액은 개략적 노동수요가 2,000시간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것은 아마도 평균적인 주업농가(Haupterwerbsbetrieb)에 상응한다. 추가금액을 오직 개략적 노동수요에 따라서 결정된다.

• 적응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목적에 맞게 쓰고 오용(예를 들어 임금인상에 전용하는 경우)을 가능한 한 막아야 한다. 적응보조금은 오직

- 신용의 상환을 포함하여 생산물자(물자와 생산활동)의 자금을 대기 위해, 또한
- 직업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비용을 위해서만

1991년 전반기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 보조금 허가와 관련하여 보조금사용증명서(Verwendungsnachweis)가 요구된다. 보조금 지급이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보조금할당 전제조건들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응보조금의 두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1991년 늦여름에 고려될 것이다.

## 5-2 입지관련 추가보조금도 역시 미리 지급되었다.

적응보조금 외에 입지관련 추가보조금도 지급되었다. 1991년을 위해 준비된 금액이 이미 4월에 총액의 지불된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연부락인 신NSTE속에 포함된 기업들은 입지가 불리한 정도에 따라 농업에 이용되는 경지 매 헥타아르 당 50, 100, 160 또는 260 마르크를 받는다. 휴경되는 경지를 제외한 농업이용 경지에 대해 금액이 지급되었다. 신설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권리소유자(Rechts vorgänger)의 (신)NSTE가 그 기준이 된다.

## 5-3 보조금 신청기한 : 모두 1991년 4월 15일까지

적응보조금의 지급과 입지관련 추가보조금 지불에 관한 신청을 즉시 해야만 한다. 농가들을 즉각적으로 도울 수 있기 위해 신청기한을 짧게 정했다. 신청서를 늦어도 1991년 4월 15일까지 다음의 해당 관청(Bewilligungsbehörden)에 제출해야만 한다.

- 신청서 양식을 구비하고 있는 곳은
  - 베를린에서는 시참사회의(Senater für Wirtschaft) 경제 담당의원
  - Mecklenburg-Vorpommern에서는 농업담당 부서들과,
  - Brandenburg, Sachsen, Sachsen-Anhalt, Thüringen에서는 각 군의 토지주무관청 농촌지도소와 구(區)가 없는 도시들에서는 시행정부이다.

- **중요사항** : 이 두 가지 조치들의 각각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한다. 적응보조금 신청서는 3부씩 작성해야만 하고, 입지관련 추가보조금의 신청서는 2부씩 작성해야 한다.

적응보조금 신청서에는 특히

- 기업의 법적 형태 (Rechtsform),
- 경작 방법에 따른 토지이용
- 종류에 따른 가축두수 및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노동력단위 (Arbeitskraftleinheiten)를 진술해야만 한다. 노동수요치 (Arbeitsbedarfszahlen) 환산하는 일은 허가관청이 한다.

## 5-4 전 망

적응보조금의 두번째 부분은 아마도 늦여름에 지급될 것이다. 보조금 할당의 전제조건들로서는 목적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 DM으로 표시된 신회계년도 대차대조표의 제출,
- 위생개선계획서 작성,
- 가축 생산과 경작지와의 결합 (Dung einheitengrenze).

입지관련 추가보조금은 1991년에 마지막으로 지급된다. 1992년 부터는 구동독 지역중 불리하다고 지정된 지역에서도 구서독 지역에서와 비슷하게 조정보조금 (Ausgleichszulage)이 지급될 것이다.

농업 기업들이 그들의 청산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봄철 영농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위에서 결정된 조치들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 6. 구동독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추가적응보조금 (BFELF, 「informiert」, 014-0805-2, 91, 6, 15)

올 봄에 이미 총 8백만 마르크가 적응보조금과 입지관련 추가보조금으로 미리 지급된 후, 지금도 1991년을 위해 마련한 총 4백만 마르크의 추가 자금이 적응보조금으로 준비되어 있다. 이자금으로 농업에 있어서

- 청산상의 애로점들을 없애고
- 필수적인 구조혁신과정(Umstrukturierungsprozeß)을 뒷받침해야만 한다.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농가에 자금을 집중하기 위해서, 1991년 하반기에 지급되는 적응보조금에는 봄에 행했던 조치에서 보다 더 엄격한 전제조건들이 적용된다.

적응보조금의 신청서는 늦어도 1991년 8월 31일까지 관할 허가 관청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보조금 지급은 10월에 시작될 것이다.

### 6-1 더 엄격한 기준

#### • 기업의 발전을 명시함

적응보조금이 실제로 효율적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농업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1991년도 하반기의 적응보조금은 다음의 경우에만 지급된다.

- 확정된 DM표시 신뢰계년도 대차대조표와
- 기업발전계획안을 제출하고
- 매년 매 헥타아르당 배출되는 가축의 배설물이 3Dungeinheiten(배설물의 단위)의 한계를 넘지 않을 때

#### • 목적에 맞는 자금사용

추가적응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을 - 올 봄에 정한 규정에 따르면서 - 1991년 하반기에는

- Betriebsmitteln(물자와 생산 활동)을 위한 자금과
- 직업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한 비용에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수혜자들은 보조금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6-2 장려책의 구조는 불변함

### • 기초금액 및 추가금액

이 보조금액을 측정하는 토대로 수리적인 노동수요가 아니다. 적응보조금은 개별적으로

- Grundbetrag(농가 당 최소 1,250 마르크에서 최대 5,000 마르크까지)와,
- zusätzlicher Betrag-kalkulatorischln Arbeitsbedarf와 준비된 국고 자금에 의존한다.

추가 금액은 봄에 개략적 노동수요 1,000시간당 1,000 마르크로 확정되었고, 하반기의 조치에서도 아마 그와 비슷한 액수로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봄에 지급된 적응보조금의 평균 지급금액은 혜택을 받은 신청자 1인당 29,206마르크에 달했다. 그러나 증가하는 노동수요로 인해 더 많은 적응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했다. 그러나 기초금액에 관한 규정을 통해 소규모 농가들(가족농가들)이 비교적 나은 혜택을 받았다.

### • 1991년도의 제2기 적응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 개별기업들(주업 농가들과 부업농가들)

- 人的會社

- 협동조합들과 社團들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경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신청자들의 농장 소재지는 구동독 지역에 있어서 한다.

### • 여기서 제외되는 자들은

- 정부 측의 자본참여가 49% 이상이 되는 국유재산과 국영기업의 권리계승자들과,
- 개략적 연간 노동수요가 500시간 이하인 家計들과 기타의 소규모 기업들과,

- 농업적응법에 따라 해체가 진행중인 기업들과,
- 합법적인 지속적 경영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다.

### 6-3 신청절차는 불변함

신청서는 늦어도 1991년 8월 31일까지 관할 허가 관청(Landwirtschaftsamter/Landratsämter)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를 심사한 후 아마 10월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신청서 양식이 구비된 곳은
  - Berlin에서는 경제와 기술 담당 시참사회
  - Mecklenburg-Vorpommern과 Sachsen-Anhalt에서는 농업 담당 부서들
  - Brandenburg, Sachsen, Thüringen에서는 郡의 Landratsämter와 區가 없는 도시에서는 시행 정부이다.
- 이들 허가 관청에서는
  - 배설물의 산정과
  - 발전계획안의 작성에 대해서 및
  - DM표시 신뢰제년도 대차대조표에 관해 상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 7. 농업을 위한 세제상의 특별규정

### - 구동독지역 농민들을 위한 조치 -

(BFELF, 「informiert」, 014-0805-2, 91.9.23)

입법기관은 농업기업들에게 그들 기업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제상의 경감조치들을 허용했는데, 이 조치들은 기업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농업조세규정의 기본 요소들은 그 개요 안에서 곧 바로 서술될 것이다. 그 주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재산 평가

- 소득세
- 판매세 (Umsatzsteuer)
- 재산세
- 토지세
- 영업세
- 법인세 (Körperschaftsteuer)
- 자본소득세 (Kapitalertragsteuer)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서 매우 중요할 수도 있는 특수한 세제상의 규정들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다. 그러므로 특히 기업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는 세무상담직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1 농업재산과 평가

1991년 1월 1일부터 구동독 지역에서도 시행되는 평가법(Bewertungsgesetz)에 따라서 상이한 세금들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과세표준(Einhertswerte)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에 따르는 재산종류에 따라 구별된다.

### ① 농업용 및 임업용 재산

(농업과 임업을 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적 재산(Wirtschaftsgüter))

### ② 부동산(Grundvermögen)

(1에 해당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 ③ 기업재산(Betriebsvermögen)

(기업이 사용하며 1에 해당되지 않은 경제적 재산)

### ④ 기타 재산

(다른 모든 경제재)

구동독 지역에서 농업용 및 임업용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가격이

- 경제적 가치(Wirtschaftswert)와 주거용 가치(Wohnungswert)가 결합되어 있고

- 비교적 기업에 관련된 비옥도 평가(Ertragswertverfahren)에서 발생한 경제적 가치(Wirtschaftswert)가 1964년 1월 1일 시행된 가치평가기준(Wertverhältnisse) 및 경제 통일에 대비한 소유권의 기초 위에서 조사되는 반면에,

이 절차를 구동독 지역에 적용하는 일은, 1935년 제정된 과세표준에 대한 수없이 많은 추가 내용과, 아직까지 불명확한 소유권관계와 또한 현존하는 세무행정 구조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구동독 지역에서 1935년 1월 1일의 가치평가에 따라 농업과 임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확정되었던 과세표준은 1991년 1월 1일부터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1991년 1월 1일 이후 과세를 위해 -우선적으로 토지세(Grundsteuer : 토지소유세) 산정의 기초로서- 가치평가(Ersatzwirtschaftswerte)를 관할 세무서가 조사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평가법(Bewertungsrecht)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매우 단순화된 경제적 가치평가(Ertragswertverfahren)로서 이것은 토지평가를 수행하여 좋은 결과들을 낳았고, 그 지역에 대한 나머지 소득조건들(Ertragsbedingungen)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경제가치평가(Ersatzwirtschaftswert)는 이용자(Nutzer)에게 속하게 되어, 이용자는 토지세부담자가 된다(이용자원칙). 이용자는 자영하는 소유권자, 임차인 또는 그밖의 다른 이용자일 수도 있다.
- 주거용 건물(Wohngebäude)은 여기에 고려되지 않고, 부동산(Grundvermögen)에 속하며, 거기에 적용되고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경제적 가치평가(Ersatzwirtschaftswert)는 토지세 산정의 토대외에도
- 소유권관계에서 파생되는 상속세와 토지취득세(Grunderwerbsteuer) 산정을 위한 것으로
- 농기업의 장부기장의무(Buchführungspflicht)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 소득세법(EStG) 제13조 a항에 따른 과세기준소득(Durchschnittsatzgewinn)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된다(여기서 표준소득(Ausgangs-

wert)은 경제적 가치평가(Ersatzwirtschaftswert)로부터 도출된다).

더 나아가 비옥도를 기준으로 한 가치평가(Ersatzwirtschaftswert)는—구동독 지역의 경제가치(Wirtschaftswert)처럼—수많은 비파세되는 법적 영역(Rechtsbereichen)에서 구분의 기준으로서 이용된다.

## 7-2 소득세

농민은 그의 농업수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 소득세 산정의 토대는 이익(Gewinn)인데, 그것은 세가지 다른 방법으로 조사된다.

### 가. 이익조사방법(Gewinnermittlungsarten)

- 재산비교를 통한이익조사(장부 기장)

최소한 다음의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부기장의 의무가 있다.

- 1년간 500,000마르크 이상의 판매,
- 경제적 가치가 40,000마르크 이상일 때,
- 1년간 36,000마르크 이상의 이익.

- 평균세율(Durchschnittssätzen)에 따른 이익조사(Pauschalierung) 평  
균세율에 따른 이익조사는 간단방법으로 한다.

평균세율에 따라 이익을 조사해야 하는 때는

- 장부기장의무가 없는 경우와
- 경제적 가치에 의해 도출된 표준소득(Ausgangswert)이 32,000마르크를 넘지 않는 경우 및
- 1헥타르의 농경지 당 가축두수가 3마리를 넘지 않거나 다 합해서 30마리를 넘지 않는 경우이다.

- 수입—지출—잔액의 계산을 통한 이익조사

장부기장의무가 없고, 평균세율에 따라 이익(Gewinn)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경우에 농민은 수입—지출—잔액의 계산을 통해서 이익을 확정할 수 있다.

농민은 평균세율에 따른 이익조사를 포기하고 재산비교나 잔액계산을 통

한 이익조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을 하면 4년간 그것에 따라야만 한다.

#### 나. 농업과 임업에서 나오는 수입(Einkünfte)과 부업(Gewerbebetrieb)에서 나오는 수입의 구분

특히 농업에 부여되는 세제상의 경감조치들은 그 농업이 부업(Gewerbebetrieb)과 구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 비영업적 기업들(Nichtgewerbliche Unternehmen)

이들은 대개 농업을 하는 개별기업(Einzelbetriebe(Familien betriebe))과 人的會社형태로 된 (소규모의) 협동조직체들로서 토지를 경작하여 그들의 현존하는 농경지에 관계된 가축사육(가축단위=VE로 볼 때)은 다음과 같은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다.

- 처음 20ha에 대해서는 최대한 10VE/ha
- 다음 10ha에 대해서는 7VE/ha
- 다음 10ha에 대해서는 3VE/ha
- 그 이상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1.5VE/ha

##### • 영업적 기업들(Gewerbliche Unternehmen)

여기에는 특히 가축단위한도를 초과하는 상업적 가축사육기업(gewerbliche Tierhaltungsbetriebe)과 원칙적으로 모든 物的會社들(Kapitalgesellschaften)과 협동조합들이 속한다(LPGen에 대해서는 1991년 말까지 과도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영업(Gewerbe)에 대해서 농업과 임업을 구별해야 할 문제는 특히 다음 분야에서 발생한다.

-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산 생산물을 추가구입할 때,
- 농업과 임업을 하면서 하는 부업경영(제재소, 양조장, 모래와 자갈 채취장 등등),
- 농민 또는 비농민을 위한 서비스업을 수행할(예를 들어 기계작업)때,
- 자가생산할 농업과 임업 생산물을 가공할 때,

- 공동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 토지거래(Grundstückshandel)를 할 때,
- 승마장(Reitbetrieben)을 운영할 때,
- 휴가철에 방이나 주택을 임대할 때,

#### 다. 소득세에 대한 혜택

소득세법은 농업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일련의 세금혜택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혜택들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액(Freibetrag)의 형태와 세금경감액(Steuerermäßigungsbeträgen)의 형태, 또한 양도이익(Veräußerungsgewinn)과 구매이익(Erntahmegewinn)에 대한 소득공제액으로서 부여된다. 구밖에도 고정자산(Anlagevermögen)인 경제재(Wirtschaftsgüter)의 양도로 생긴이익은 면세로 이전될 수 있고 기업경영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Sonder abschreibungen)가 행해질 수 있다.

이 혜택조치들의 목록은 부록에 실려있다.

#### 라. 기업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

어떤 양도이익이나 구매이익(Erntahmegewinn)을 세제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해당재산대상물이 기업재산에 속하는가 또는 개인재산에 속하는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LPG에 들어갔었던 기업/경지(Betriebe/Flächen)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농업용 및 임업용 기업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했다고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이며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부활된 자영농(Selbstbewirtschaftung)의 경우에 Betriebe/Flächen은 농업용과 임업용의 기업재산으로서의 성질을 다시 가지게 된다. 농업가와 임업가가 이 농장이나 경지를 양도한다면, 양도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Veräußerungserlös)과 장부가격(Buchwert)사이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구매이익(Erntahmegewinn)에 대해서

도 세금을 내야만 한다.

### 7-3 판매세

판매세는 그 성질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소비세이다. 이것은 기업가가 청구하여 마지막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다.

농업에 있어서 판매세는 두 가지 상이한 과세방법이 이용된다.

#### 가. Pauschalierungsverfahren(평균세율에 의한 과세)

농업 판매세의 처리는 평균세율과 세의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농기업이 공급품에 대해 유보한 판매세의 세율과 상품구입에 대해 지불한 판매세(Vorsteuer)의 세율은 평균세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없어질 정도까지 서로 상쇄된다.

대부분의 농업생산물(예를 들면, 곡물, 가축, 고기, 우유)에 대해서 농민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11%의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는 선불한 세금(Vorsteuerbelastung)의 보상(Abgeleitung)에 따라 그에게 귀속되는 액수보다 3% 이상을 현재 유보하고 있다(부가가치세에 대한 소득 조정(Einkommensangleich)).

가축번식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판매세에 대해서는, 전 회계년도에 33 OVE 이상을 생산하지 않았거나 보유하지 않았다면 3%의 소득조정을 완전히 받게 된다. 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가축두수부분으로 인한 판매세와 11%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만 한다.

법적 형태에 따른 기업(Gewerbebetriebe (人的會社와 物的會社)) 구협동농장(Erwerbsgenossenschaften 그리고 Wirtschaftsgenossenschaften)은 평균세율課稅에서 제외된다. 협동농장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평균세율에 의한 課稅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나. 일반적 과세방법(Regelbesteuerung : 영업 분야에서 하듯이 정상적 방법



신청한다면 최소한 5년간 평균세율에 의한 과세를 포기하고 판매세법의 일반 규정에 따른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판매세(Vorsteuer)와 유보한 판매세를 장부에 기재해야만 한다. 3%의 판매세 감액(Umsatzsteuerkürzungsanspruch)요청을 고려하여 正의 차액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負의 차액은 세무서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3%의 판매세감액요청은 법적 형태에 따른 기업(Gewerbebetriebe)에도 허용된다. 이 경우에 기업은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농기업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측되는 선불세의 상환(Vorsteuererstattung)이, 예측되는 부가가치세지불의 부담(Mehrwertsteuerzahllast)보다 클 경우에는, 일반적 과세방법(Regelbesteuerung)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 큰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일반세율(Regelsteuersatz)은 14%이다.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일반과세(Regelbesteuerung)를 할 때 7%의 경감된 세율을 고려할 수 있다.

#### 7-4 재산세

구동독 지역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면제된다.

#### 7-5 토지세

토지세는 읍·면 지방자치단체(Gemeinde)에 내며 그곳에서 징수한다. 국내에 있는 모든 토지소유(Grundbesitz)에는 토지세납부의 의무가 있다. 토지세의 면제는 공공재산의 관리자인 국가, 교회 및 공익법인을 위한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만 존재한다. 토지세를 내야 할 사람은 농업재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만일 소유권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거나 그밖의 다른 이용자가 토지세납부 의무자가 된다.

농업용과 임업용 재산의 평가(Wirtschaftsgüter)에 있어서 토지세 산정의 토대는 비옥도 평가(Ersatzwirtschaftswert)이다. 세무서는 이 평가에 대

해 세액(Steuerme $\beta$  betrag)을 산출하기 위해 확정된 세율(Steuerme $\beta$  zahl)을 적용한다. 농업과 임업을 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1천분의 6이다. 납세자(Gemeinde)는 토지세(Grundsteuer A)를 위해 그들이 확정한 기초단위(Hebesatz)를 세액추정(Steuerme $\beta$  betrag)에 적용한다.

농업용과 임업용 재산에 대해 정했던 1935년도 과세표준가격이 폐지됨에 따라서 농기업의 관리자나 노동자가 이용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토지세는 대개 특정단위로서(Ersatzbemessungsgrundlage) 주거면적(Wohnfläche)에 따라 추정된다. 토지세(Grundsteuer B)는 지방자치단체(Gemeinde)가 정한 기초단위(Hebesatz)에 따라 주거면적 1㎡당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다.

### 7-5 영업세

영업세는 지방자치단체(Gemeinde)의 주요 수입원이다. 영업세는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Gewerbebetrieb)에게 부과된다.

통일조약은 LPG'en과 협동조합의 법적 형태로 된, LPG'en의 권리승계자(Rechtsnachfolger)에게 다음과 같은 과도기적인 경감조치들을 허용했다.

- LPG'en은 1991년에 일반적으로 영업세가 면제된다.
- 이 면세조치는 LPG의 권리승계기업의 활동이 농업과 임업 경영에 국한되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1992년과 1993년에도 계속 시행된다. 다시 말하면, 상업적 가축사육은 이미 1992년부터 더 이상 면세가 되지 않는다.

구동독 지역에서 영업세 과세의 기초는 영업소득(Gewerleertrag) 뿐이다. 거기에서 영업자본(Gewerbekapital)은 과세되지 않는다.

### 7-7 법인세

법인(物的會社, 협동조합, 사단법인(Verein))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된다. 유보된 이익에 대한 세율은 50%이다. 배당금(ausgeschütteter Gewinn)으로 지급된 이익에 대한 세율은 36%이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36%)은 사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세액(Einkommensteuerschuld)에 대해 산정된다.

### 7-7 자본소득세(kapitalertragsteuer)

자본소득세는 특별한 징수형태의 소득세이다.

이익배당금(Gewinnausschüttungen)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공제된 후 25%의 자본소득세가 징수되며, 이것은 물적회사나 협동조합이 납부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세를 先拂한다는 점이다. 이 선불된 금액은 나중에 개인 소득세범위 안에서 세무서가 참작한다.

세법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업을 창설할 때와 기업을 변경할 때 어떤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세무상담가와 협의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 부 록

### 농민과 농기업에 대한 소득세 혜택

- 일반적으로 연간 2,000마르크의 소득공제액(Freibetrag)이 있고, 함께 세액이 사정되는 부부에게는 4,000마르크의 소득공제액이 있다.
- 연간 최대 2,000마르크에 이르는 소득세감액(Steuerermäßigungsbetrag)이 있고,
- 기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00,000마르크를 초과하는 양도이익은 제외하고 30,000마르크에 대한 이익공제(Gewinnfreibetrag)가 있고,
- 55세가 넘었거나 직업수행불능(Berufsunfähigkeit)으로 인해 기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300,000마르크를 초과하는 양도이익을 제외하고 120,000마르크에 대한 이익공제가 있고,
- 소규모 기업을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

---

1) 1995년 말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익공제가 90,000마르크가 된다. 이때 경제재 평가액(Wirtschaftswert)와 40,000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농업외수입(außerlandschaftliche Einkünfte)이 24,000마르크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부부일 때는 48,000마르크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물려나는 상속인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1992년 1월 1일"이전에 토지(Grund und Boden)를 양도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120,000마르크이다. 이때 납세의무자의 소득은 24,000마르크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48,000마르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른 경우에는 등급을 정해 공제를 축소한다.

－ 3천만 마르크까지의 기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함으로써 인한 납세의무가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의 평균 세율이 적용된다.

－ 1993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제는 90,000 마르크이다. 이때 그 양도대금은 1985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했던 기업채무(Betriebsschulden)를 반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소득은 24,000 마르크를 넘지 않아야 하며, 부부의 경우에는 48,000 마르크를 넘지 않아야 한다(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정해 공제액(Freibetrag)을 축소한다).

－ 양도이익을 평가재산(Ersatzwirtschaftsgüter)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

－ 기업경영 분야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감각상각(Abschreibungen)을 높여 준다.

### Ⅲ. 농업시책에 대한 질의·답변

(BFECF, 「Informiert」. 014—0805. 91.1.16)

#### 1. 농업구조정책

##### 1-1 농업정책의 목표달성

연방정부의 목표설정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현대산업사회에서의 농업은 단순한 식량생산이상을 의미한다. 농업은 근본적으로 농촌을 형성한다. 온전한 자연과 풍치(Landschaft)를 지니고서 제대로 기능하는 농촌취락은 농업과 임업이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다.

독일의 통일 이후(농업정책의) 법적인 기초와 주요목표는 연방의 洲로 새로 편입된 舊동독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농업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만 연방에 새로 편입된 洲들의 농촌이 생활상태, 노동상태, 그리고 환경상태에서 舊서독지역의 상태에 맞게 유기적으로 적응할 것이다.

연방정부의 정책은 효율적인 전업농가(Haupterwerbsbetrieben)와 부업농가(Nebenerwerbsbetrieben)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적으로 여러 측면을 지닌 농가농업(bäuerliche Landwirtschaft)이 농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를 가장 먼저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생각에 부응하는 농업구조의 특징은

- 농가(bäuerliche Familien)는 자기소유농지와 임차농지를 자기책임 하에 경영하고
- 경작지(Fläche)에서의 축산업을 강화하고
-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전락할 수 있는 생산이다.

이러한 기준에 알맞는 농업은 다양한 법률적 형태와 기업형태를 지닌 농가(landwirtschaftliche Betrieben)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새로운 洲들에서 재산관계(Eigentumsverhältnisse)가 지체없이 명확해져야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Verfügbarkeit)이 가능해져야 하는 점이다.

### 1-2 가족농(Familien betriebe)/기업농 형태(Untenhmensformen)

가족농(bäuerlicher Familienbetrieb)을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조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전제가 충족되어야만 하는가?

농가들을 재조직하고 근대화하기 위해 개별 농가에 대한 투자촉진프로그램을 세우는 의미에서 가족농(bäuerliche Familienbetriebe)은 다음과 같다.

a) 주업농업을 하는 농가 : 이 경우, 농장주(Betriebsinhaber)는 법안이 발의되는 시점에서 또는 촉진조치들의 결정 이후 제조직된 경우에 최소한 그의 총소득의 절반을 농업에서 획득하고 그의 총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이 농업노동에 투입되는 경우이다.

b) 부업농업을 하는 농가 : 이 경우 농장주는 법안이 발의되는 시점에서 그의 소득의 50% 이하를 농업으로부터 얻고 그의 총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을 농업 외의 활동에 쓰고 있는 경우이다.

순수한 임대차제도(Pachtbasis) 위에도 가족농(bäuerliche Familienbetriebe)을 창설하는 일이 가능한가?

舊서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舊동독지역에도 순수 임대차제도 위에도

농가들을 조직할 수 있다.

신설되는 가족농장에게 “적당한” 평균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농가의 가장 커다란 소득원이 되어야 할 농업은

- 일반적인 소득향상과 복지향상에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 장기간동안 경쟁력을 갖추는데 자기자본(Eigenkapital)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Kapazitäten)을 사용해야만 한다. 어느 정도의 농가규모(Betriebsgröße)가 필요한가는 평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처지와 가족의 조건(노동능력,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서 상세한 경영학적 분석을 통하여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농가설립자는 농촌지도를 받아야만 한다.

앞으로의 축산업은 어떤 조건에 달려 있는가?

연방에 편입된 舊동독지역에서 축산업의 구조는 새로운 법률과(예를 들어 조세법, 환경법, 가축전염병법, 가축보호법) 경제적인 기본조건(Rahmenbedingungen)에 좌우되고 있다. 어떤 구조가 형성될지는 이런 기본조건을 배경으로 하고 경쟁을 통하여 결정되어야만 한다.

조세법상으로는 가축사육의 구조적 발전을 위한 다음의 규정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평가법(Bewertungsgesetz) 제51조에 따라 경지면적(landwirtschaftlich genutzte Fläche : LF) 1ha당 규정한 가축단위(Vieheinheit : VE)의 한도, 이 한도를 초과할 때는 가축총두수(Tierbestand)의 분야만 농업 수익(landwirtschaftliche Nutzung)에 속하고, 가축단위는 그 한도를 초과되지 못한다. 기타의 분야는 영업적인 가축사육이다. 그렇게 되면 일련의 조세감면조치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또한 영업세의 면제에서도 제외된다).
- 판매세법(Umsatzsteuergesetz) 제24조에 따라 규정된 한 농가당 330 VE의 상한선, 이 상한을 초과할 때 소득조정(Einkommensausgleich)

은 판매세전적(Umsatzsteuerpausehale)을 3% 정도 인상한 형태로 결정된다. 이 소득조정은 1991년 12월 31까지의 유예기간을 둔다.

산업적 대량생산은 연방정부의 농업정책 목표가 아니다. 그것의 존속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대표적인 낭비인 기존의 제도가, 관련 법규—특히 환경보호법—를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히 발달될 수 있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특정한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즉각적인 해산이 요구될 수도 있다.

“집단농업(Gruppenland wirtschaft)”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며 그것은 어떻게 장려되는가?

“집단농업”은 독일 회사법(Gesellschaftsrecht)에 의해 허용되는, 협동을 위한 모든 법률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가족농(bäuerliche Familienbetriebe)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범위내에서 장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농업을 하도록 장려받는 농민은

- 法人의 형태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규정된 기초에 따라 협력해서 일하고,
- 공동경영을 하기 위해 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소유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협동을 위해서는 최소 6년의 기한을 합의해야 한다. 협동체의 구성원들은 협동체의 자본 참여를 위해 현금출자나 물건출자 또는 개인의 노동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LPG'en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법적 형태(Rechtsformen)가 적합한가?

LPG의 해체와 구조변경에 있어서는

- 등록 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en, e. G.)
- 物的會社(Kapitalgesellschaften 특히 有限會社 GmbH)
- 人的會社(Personen gesellschaften)

의 형성이 가능하다. 적합한 형태는 농민들의 구체적인 조건과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 1-3 적응보조금(Anpassungshilfen)과 조정보조금(Überbrückungshilfen)

연방정부는 기타 어떤 적응보조금을 주는가?

또한 그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할당되는가?

舊동독지역의 농가에서는 화폐의 통일, 경제적 통일, 사회적 통일이 실시된 이후—판매부진과 심한 가격하락으로 인해—청산상의 애로(Liquiditätsengpässen)가 너무나 커서, 1990년 하반기에 대비하여 2조 2천 8백 50만 마르크나 책정한 예산이 적응보조금으로 이미 3/4분기에 전부 지불되었다.

이 예산은 1990년의 3번째 추가예산을 통해 6억 6천 5백만 마르크가 추가로 증액되었다. 1991년에도 적응보조금과 전직(轉職)보조가 허가되리라고 예측된다. 그것들은 지속적인 생존능력이 있다고 기대되는 농가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직접적인 보조금 외에도 단기의 청산금융(Liquiditätskredit)에 대한 이자를 경감해주는 형태로서도 보조금이 주어진다.

이 조치의 계속을 위한 세부사항들이 올해(1991년) 전반기에 결정될 것이다.

### 1-4 재산문제/토지정리

탈퇴한 LPG조합원은 그들의 LPG에 대해 어떤 청구권을 주장하는가?

탈퇴한 조합원과 LPG 사이의 재산정리(Auseinandersetzung)에 관한 법적 토대는 농업적응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 제44조 제2항과 제49조이다. 그에 따라 LPG와 탈퇴한 조합원 사이에서 재산상의 정리가 행해져야 한다.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는 조합설립시 지참했던 재산의 몫과 그 몫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증식분(Vermögensentwicklung)과 조합원이 노동을 통해 가치창조(Wertschöpfung)에 기여한 몫으로 나타난다(제44조 제2항).

청구권에 의한 지불은 연말결산의 확인 이후 일개월 이내가 된다(제49호 제1항). 물론 LPG의 재산이 부채상환에 충분하지 않을 때는 청구권이 없다

(제49조 제3항).

정상적인 경우에는 LPG의 현존 재산으로부터 제공된 재고분의 명목가치가 우선 반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상의 재산이 존재한다면, 그것으로부터는 여러 다른 요소들이 임금지불(노동에 대한 임금;토지의 임차;재고분에 대한 이자)을 하기 위한 금액에 충당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Eigentum)의 변화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반환에 관해서는 그 청구권을

- LPG'en의 조합원이 주장하는지
- 국외자(Außerstehenden)가 주장하는지
- 또는 상황에 따라서 舊동독의 주민이 아닌 사람(Nichtbewohnern)이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LPG조합원은 그들의 조합원자격을 解約告知(Kündigung)할 수 있는 권리(농업적응법(Landwirtschaftsangepassungsgesetz)의 제43조 이하)를 가진 자이다. (1990년에는 1개월의 유예기간, 1991년과 1992년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 LPG는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 (탈퇴한 조합원에게 소유권이 있는)토지와

: LPG의 소유권으로 이전된 관리사무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객관적인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해”(예를 들자면 토지의 경작 때문에)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 토지(Ersatzgrundstücke) 내지 건물(Ersatzgebäude)에 대한 청구권 또는

: 피해보상(Entschädigung)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

- 소유권자로서 LPG'en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Nichtmitglieder)인 개인(Personenkreise)의 토지는 대개 이른 바 이용계약(Nutzungsvertrag)이나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때로는 LPG집단의 협의회가 거의 무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법률관계는 폐지되어야 하고 독일연방공화국에 적용되는 토지임대차법(Landpachtrecht)

에 따른 임대차계약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유권자에게는 LPG조합원과 같은

: 해약고지와

: 반환 청구권이

귀속된다.

원상회복(Rückübertragung)에 대한 결정은 수없이 제기된 청원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는 LPG 내지 후속기업(Nachfolgenehmen)과 협조하는 규정이 추구되어야만 한다.

재산을 몰수당한 개인들은 몰수된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청구권을 가지는가?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토지개혁 과정에서 점령법이나 점령통치법적 토대로 위해 재산을 몰수당했던 개인들은 몰수된 재산의 반환에 대해 아무 청구권이 없다(통일조약 제41조와 함께 1990년 6월 15일자 “일반 해설(Gemerisame Erklärung)”). 이 법률해석(Rechtsanfassung)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카알스루헤(Karlsruhe)에 있는 연방헌법도 통일국민의회가 입법 의회기간 중에 그같은 몰수사례들(Enteignungsfälle)에 대한 특별한 조정의 실시를 결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 경우 이외의 사람들은 “재산청구권 신청에 대한 규정”과 “미해결 재산 문제 조정을 위한 법”의 원칙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가치의 원상회복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특정의 경우에는 재산가치의 원상회복 대신에 손해배상(Entschädigung)이 허락된다. 만일 “통일조약 제3조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특별투자에 관한 법”이 적용되면, 원상회복은 제외된다. 이경우에 판매대금 내지 토지판매대금(Erlös bzw. Verkehrswert)이 더 많으면 그것의 지불에 대한 청구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재산청구권(Vermögensansprüche)은 어디서 어떻게 가장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는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반환청구권과 기타 재산의 반환청구권은 권리(LPG 법 제43조) LPG의 대표자인 LPG議長에게 제기할 수 있다.

청구권들은—수많은 청원서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행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이행되지 않는다면 청구권자는 마지막으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PG를 탈퇴하는 LPG조합원의 개인적 가치창조(Wertschöpfung)는 어떤 기준에 의해 조사되어야 하는가?**

개인적 가치창조를 조사하자면 우선 DM으로 표시되는 신회계년도 대차대조표(DM-Eröffnungsbilanz)상 필수적인 재산액(Vermögensbestände)의 확인과 평가를 전제로 한다. LPG조합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농업적응법의 제44조 제2항이 일반적인 원칙들을 포괄한다. 연방정부는 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제안들을 공고할 것이다.

**조합설립시 지참했던, 장소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적합한 보상토지(Ersatzflächen)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이용자(대개의 경우 LPG)와 그가 지참했던 토지를 단기간에 자유로이 처분하고자 하는 소유권자 사이에 사용을 위한 교환이(privatrechtlicher Nutzungstausch) 하나의 실제적인 해결책으로서 제시된다. 이러한 교환은 최종적인 소유권의 해결을 유보하고 농업적응법(Landwirtschafsanpassungsgesetz)/경지정리법(Flurbereinigungsgesetz)의 절차를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관계와 기타 법률관계는 이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公認 Legitimation) 새롭게 정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절차에 토지를 맡긴 사람은 누구나 等價의 토지보상(Landabfindung)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LPG조합원은 LPG와 재산상의 정리를 할 때 분할지불(Abschlagstahlung)의 권리를 가지는가?**

분할지불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 경우에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지정리(Flurneuordnung)는 언제 고려되어야 하는가?**

소유권관계의 확립과 재조직을 위한 절차는 관계자들의 제안으로 농업적

응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의 제53조 제2항에 따라 개시되어야 한다.

이 법의 집행은 앞으로 설립되어야 할 경지정리관청(Flurneuordnungsbehörden)에 달려 있고, 이 경지정리관청의 조직과 인원배치는 舊동독이었던 연방의 신설주들이 맡는다. 이 관청은 서독의 협력국들(Partnerländer)의 도움을 받아 현재 설립되고 있는 중이다. 이 공동작업은 인적교류(Personalaustausch)와 舊동독지역에 적용될 모델(Modellverfahren)을 완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연방농무성(BML)은 舊동독지역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이 노력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그에 부합하는 행정관청이 재조직되고 역시 그 구성이 진행 중인 협동기업(Landgesellschaften)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경지정리절차의 실행이 시작될 것이다.

**농업용 토지의 소유원관계를 복구하고 재조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은 어디로부터 조달하는가?**

소유권관계를 확립하고 재조직하기 위한 절차에 드는 비용은 농업적응법의 제62조에 따라 각 洲가 부담한다.

1990년 6월 18일자 “경지정리 촉진을 위한 규정”(예를 들어 길, 도로, 수로 같은 공동의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에 드는 자본이라는 의미에서의 실행비용(Ausführungskosten)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경지정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참여자(Teilnehmergemeinschaft)가 부담한다(경지정리법 제105조). 실행비용은 보조금과 제삼자의 기타 작업이 감소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성과는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실행비용은 경지정리에 있어서와 가속화된 전체사업(Zusammenlegungsverfahren)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20%를, 그리고 포도원경지정리에서는 25%를 미달하면 안된다(경지정리 촉진을 위한 규정의 제4조 제5항을 보라).

1991년에는 이러한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결정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이 관리하는 농업용지와 임업용지는 어떤 원칙에 따라 사유화되는가 ?**

1990년 7월 17일자 신탁법(Treuhandgesetz)의 규정들에 따라서 국유재산(이전에 독일민주공화국 DDR이 소유했던)은 원칙적으로 사유화되어야 한다.

독일연방의 5개의 신설주에서 국유 농업용지와 임업용지의 私有化는 토지거래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洲, 자치단체 및 법인과 개인들이 농업용 재산 중 아직은 적은 부분에 대해 권리청구권(Rechtsanspruch)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도 현재 농업용과 임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상당부분이 자연보호·여가·휴양·하부구조의 확대 및 주민의 정착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매각과 임대차조건은 능력있는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풍부하고 안정된 농업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야만 한다. 불건전한 토지분배는 피해야만 한다.

만일 현재 사기업이나 공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농업용 토지와, 신탁관리청의 토지에 있는 건물을 기술적으로 한 농가에게 결합시킨다면, 이러한 농가결합(betriebliche Einheit)은 매각을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국유지 위에 제삼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다면, 이 물적(物的) 소유권(dingliches Eigentum)은 결합되어야만 한다.

**임대와 특별매각(Sonderverkäufen)을 통한 농업용지의 불건전한 집중을 어떻게 저지하는가 ?**

광범위한 소유권분산에 관심을 두면서 농업구조상 불건전한 토지자원분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별취득자(Einzelerwerber)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토지가 매각된다.

통일조약의 효력발생과 함께 舊동독지역에서 토지거래법과 토지임차거래법이 적용된다. 이 두 법은 농업용지의 불건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두 법을 시행하는 관할권은 洲들에 있다.

## 1-5 부채탕감/신용공여

LPG'en과 국영기업은 舊채무를 어느 정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가?

통일조약 제25조 제3항에 따라서 신탁관리청의 판매대금은 개별 경우에 농업의 구조적응 범위내에서 농기업의 부채탕감조치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 제안은 신탁관리청이 직접 제출해야만 한다.

LPG의 재산이 조합의 부채를 변제하기에 불충분하다면, 탈퇴자들의 반환에 대한 청구권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 제49조 제3항). 탈퇴한 조합원은 LPG의 부채에 대해 책임이 없다. 토지의 반환은 면세로 이루어진다.

타인자본의 담보대출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조건은 각 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용담보의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토지에 의한 담보대출 외에도 Sicherungsabtretung, 양도담보(Sicherungsübereinigung), Bürgschaft 및 質權(Pfandrecht)이 있다.

특히 순수한 경종농업(Ackerbaubetriebe)을 하는 농가들은 재정적인 곤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주업으로서 경종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재조직하는(55세까지의)농부들은 23,500마르크까지의 착수보조금(Starthilfe)을 (투자금액과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종자나 비료, 식물보호재를 구매하는 비용은 수확시의 납입물품(Lieferungen)으로 부채를 갚는 신용(Lieferantenkredite)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농부들은 그들이 은행예금을 사용할 수 없는 동안 단기대부(Kurzfristiges Darlehn)를 받을 수 있다.

## 1-6 농업장려조치들

연방정부는 국가적으로 장려정책을 시행할 때 舊서독의 농업에 대해서 기회균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농업장려조치들은 유럽공동체법을 지향해야만 한다. 독일연방 내에서는 순수한 洲정부의 조치들을 제외하고, 농업구조적인 장려조치들이 연방-洲

—공동체(EC)의 과제인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GAK)의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연방과 州가 의석과 발언권을 행사하는 PLANAK가 장려조치들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각 州는 농업구조의 진흥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제기할 수 있고, 기회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독일 각 지역의 농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제약조건들을 설정하려고 노력한다. 연방정부는 농업진흥의 원칙들을 곧 완성하면서 이 목표도 고려할 것이다.

어떤 관청이 농업장려조치들을 제안할 수 있는가?

郡의 농업담당부서/농업실(Landwirtschaftskammern)

개별 농가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농업 장려조치들이 있는가?

GAK의 범위 내에서 가족농(bäuerliche Familienbetriebe)을 후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 농장주 자신과 그의 가족이 지속적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업농업을 하는 가족농을 재조직하고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며,
- 환경, 에너지절약 및 동물보호의 개선에 유리한 특수한 장려조치들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투자보조금(Investitionshilfen)이 포함된다.

- 23,500마르크까지의 착수보조금, 이것은 투자금액과는 상관없다.
- 최대 300,000마르크에 달하는 자본대부에 대해 5%까지 이자를 경감한다(부동산에 대해서는 20년의 대출기간, 기타 투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대출기간).
- 다음의 경우에는 건물과 구조물에 대해 추가로 공공의 대부를 제공한다(1%의 이자와 2%의 상각)

=농가 재조직을 위해서는 농가 당 160,000마르크까지

(이미 설립된 농가의 경우에는 농가 당 250,000마르크까지)

=농가 현대화를 위해서는 농가 당 50,000마르크까지

(이미 시작한 농가의 경우에는 농가 당 90,000마르크까지)



= 목장에 관련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부문에 대해 농가당 50,000마르크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제무역을 위한 기계 조달에 대해서도(5년 이상 된 기계들은 제외하고) 장려조치들이 행해진다.

**LPG'en의 구조변혁을 위해서는 어떤 보조금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장려정책의 원칙들은 1991년 중에 의결된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 “농업정책 보고서”가 준비된 것이다.

**농촌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과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한 연방-州-공동체의 과제의 범위 내에서 시험되는 개별 농가에 대한 조치들과 개별 농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치들은 노동시장에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

유럽공동체위원회(EG-Kommission)는 舊동독 지역의 발전을 위해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총 30억 ECU(유럽통화단위: 약 63억 마르크)를 준비했다. 이렇게 장려된 투자금액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舊동독 지역중 불리한 지역은 유럽공동체법에 따라 언제 확정되며, 유럽 공동체법에 따른 장려조치들은 언제 시작될 수 있는가?**

불리한 지역내에서 유럽공동체에 일치하는 지역구분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시작되었다. 1991년에 지역조정(안)(Gebietskulisse)이 유럽공동체위원회와 유럽공동체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들의 재가를 받게 될 것이다.

PLANAK와 유럽의회가 불리한 지역에 관한 지역목록을 인가한 후에, 1992년부터 정려조치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역구분을 할 때 자연적 입지단위에 따른 구분을 적용할 수 있는가?**

자연적 입지단위의 구분은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유럽공동체법에 따라 행한 구분을 전용(轉用)할 수는 없다.

유럽 공동체법에 따르면 농업비교척도(LVZ: Landwirtschaftliche Vergleichszahl)가 지역구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구분은 1991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1992년부터 조정보조금

(Ausgleichszulage)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구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 a) 산악지역(Berggebiete)
  - 고지대(Höhenlage)
  - 경사지(Hangneigung)
- b) 불리한 농업 지역
  - 토지 생산력이 낮은 지역
  - 평균 이하의 경제적 상황을 가진 농업 지역
  -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 c) 소규모 지역
  - 특수한 단점을 가진 지역

**어떤 조건과 전제하에 조정보조금이 지급되는가 ?**

주업농가와 부업농가는 다음의 경우에 조정보조금을 받는다.

- 불리한 지역 내에 최소한 3ha의 경지(1989년 6월 17일까지 조성된 임업용지를 포함하여)를 가지고 있을 때
- 농업 활동을 최소한 5년간 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경작지의 休耕원칙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지에 대해서도 조정보조금(Ausgleichszulage)이 지급되지 않는다.

적응보조금과 관련하여 자연적인 立地の 단점을 조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급되었던, 입지조건에 따른 보조금은 1991년에도 지급된다. 거기에 대해 미리 총 4억 마르크가 준비되어 있다. 그 보조금은 자연적 입지단위(NStE natürliche Standorteinheit)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 있으며 불리한 정도에 따라 매 ha의 경지당 50마르크에서 260마르크 사이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 1-7 休耕/粗放농업

**휴경/조방농업을 어떻게 계속하는가 ?**

1991/92 회계년도부터 유럽공동체 전역에 걸친 부담 경감조치의 범위 내

에서 휴경과 조방농업을 전독일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원칙들이 적용된다. 5년간 최소한 그들의 경작지의 20%을 휴경하거나, 파잉생산된 농산물을 최소한 20% 정도 감소시키는 농업기업들과 농림업기업들은 그에 따른 소득조정을 받는다. 이 새로운 장려 원칙들은 1991년 봄에 PIANAK가 舊동독 지역 농업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결정한다. 이 장려 원칙들의 토대 위해서 洲들은 앞으로 그것의 시행을 규정할 표준을 정한다.

휴경되는 경지는 자연적인 모습을 최대 한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휴경의 실행은 1991/92 회계년도부터 새로 편입된 5개 洲의 관할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경작지의 휴경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별법의 원칙들은 휴경되는 경지의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비료를 주어서도 안되고 식물보호제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 녹색의 초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파종, 자가녹화)
- 경지위해서 성장하는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 어떠한 토지개량조치를 위해서도 안된다.

각 洲는 洲의 원칙내에서 상세한 개별 규정들과 특별한 명령들을 내릴 것이다.

사과밭 개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금이 지급되는가?

사과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990/91 회계년도부터 1992/93 회계년도에 사과밭을 개간한다는 신청에 대해 매 ha당 약 8,200마르크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의 전제조건은 사과밭이 최소한 1ha가 되어야 하고, 1ha당 최대 20년생 사과나무가 400그루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신청인은 매 회계년도의 4월 1일 이전에 사과밭을 개간할 것과, 사과나무를 새로 심는 것을 포기할 것과, 파낸 사과나무를 폐기할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이 조치에서 제외되는 것은 1ha당 400구 이하의 사과나무가 있고 조방적인 사과밭과 사과주를 생산하기 위한 사과밭이다.

## 1-8 輕由의 저가 공급

### 舊동독 지역에서도 경유가 저가로 공급되는가?

舊동독 지역에서 1900년 7월 1일자로 경제통합과 통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석유에 대한 과세가 실시됨으로서, 농업 생산과 임업 생산에 사용되는 디젤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舊동독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도 경유를 저가로 공급하는 것은 경쟁의 원칙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100리터의 디젤연료를 41.15 마르크로 책정하는 이 저가정책은 1990년 하반기에 독일 연방 재무부와 독일연방 식량·농업·임업부가 합의한 Volkskammer의 법에 의해 완성되었다. 1990년 3/4분기와 4/4분기에 대해 경유를 저가로 공급하도록 제안했던 기한은 1991년 2월 15일이다. 이것과 함께 결정기간이 중요하다.

1991년 1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舊서독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용 경유이용法(Landwirtschafts-Gasölverwendungsgesetz)이 적용된다.

## 2. 시장정책과 가격정책

### 2-1 일반적 질문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입됨으로써 농업분야의 생산자들과 식품산업에는 어떤 기회와 필요조건들이 나타나는가?

화폐를 통일하고 경제공동체를 형성함과 함께 舊동독의 농업부문도 시장경제적인 정리를 행했다. 식품의 생산과 분배를 중앙집권적으로 계획하는 대신, 특히 아래와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들이 도입되었다.

- 생산수단에 대한 私的 소유권
-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 경쟁과 자유로운 가격의 형성
- 모든 기업들에 대해 균등한 발전의 기회

기본조건들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농업경제와 식량산업에 있어서 광범위한 적응상의 문제들을 노출시킨다. 그러므로 경쟁 속에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합리화와 현대화가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다. 여기에는 또한 시장에 대한 확실한 지식(Marktkenntnisse)이 있어야 하며, 그 지식이 없이는 가격결정을 할 수도 없고 수요가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도 없다.

농산물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며, 이때 유럽공동체의 시장조정체계(Marktdrordnungssystem)는 가격수준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그물”을 밑에서 형성한다. 생산자가격(Erzeugerpreis)의 수준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공급과 수요에 따라, 품질과 생산자의 교섭능력(Verhandlungsgeschick)에 따라 결정된다. 舊동독 지역에서도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과 질적으로 우수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 2-2 시장 규범

**舊동독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수출규정들이 적용되는가?**

유럽공동체의 규정들은 상품이 거래될 수 있으면 상품의 구성에 따라 어떤 수출보상금(Exporterstattung)을 지급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유럽공동체의 관보에 공고되는 수출보상금일람표에 규정된다.

**유럽공동체는 舊동독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특별보상금(Sondererstattungen)을 얼마 동안 허용하는가?**

유럽공동체위원회가 농업부문의 무역에 대해 독일 통일 이후에 적용되는 조치들을 유럽공동체규정(EWG : Nr. 2762/90)에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舊동독 지역의 농산물에 주는 특별수출보상금은 독일 통일 이후에도 계속 지급되며, 베를린에 있는 Anstalt für landwirtschaftliche Marktdrordnung(ALM)이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이 특별보상금을 서면으로 파악할 것이다.

**무엇에 대해 公告하며 누가 생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가?**

Bundesanstalt für landwirtschaftliche Marktdrordnung(BALM : 농산물 시장법)은 제3국으로 수출되는 해당상품에 대해 수출공고의 범위 내에서

조정보상금(Ausgleichsbeträge)을 지급한다. 수출공고에 참여하기 위한 서면 신고는 BALM에 제출되어야 한다. 수출하는 각 품목마다 최소의 조정보상금을 요청하는 입찰자에게 낙찰된다. 보조금의 상한은 전문언론 관계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보조금 수령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제약물량을 보조금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3국으로 수출해야만 한다.

**우유생산보장물량규정(Garantiemengenregelung Milch)**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앞으로는 어떻게 그 윤곽이 형성될 것인가?

연방정부는 유럽공동체 내에서 舊동독지역에 630만톤의 우유쿼터를 배정했다.

생산보장물량의 규정은 1991년 4월 1일 이후 현재 발효되고 있다. 1991/92 우유회계년도 중에는 잠정적인 참고물량(Referenzmengen : 공급권 Lieferrechte)이 분배된다. 국가의 저장물량을 초과하는 공급권은 신설된 농가, 재난을 당한 농가, 그리고 암송아지사육농가에 배정될 것이 예측된다.

**LPG의 우유쿼터**는 어느 정도까지 신설된 개별 농가에 이전될 수 있는가?

농업적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LPG는 탈퇴할 조합원들에게 1990년 6월 29일부터 우유쿼터를 나누어줄 의무를 지고 있다. 舊동독 지역에 대한 우유쿼터는 1991년 4월 1일 이후 유럽공동체法 내에 확정된다. 이 테두리 안에서만 앞으로의 쿼터들이 재분배되거나 탈퇴한 LPG 조합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분배의 원칙에 관해서도 결정이 있어야 한다.

**지역적인 우유생산구조가 앞으로 자연적인 立地조건에 따라 재조정될 것인가?**

舊동독 지역의 우유산업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특히 1992년 3월 31일까지는 참고물량을 얻기 위한 어떤 경지결합(Flächenbindung)도 없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舊동독 지역에 분배된 참고물량은 관할 농업局的 협력하에 이 지역 안에서만 양도될 수 있다.

**설탕생산쿼터/설탕공급권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연방정부는 유럽공동체 내에서 舊동독 지역을 위해 만족할 만한 설탕생

산쿼터를 얻어냈다. 이 설탕생산쿼터는 아마 847,000톤에 이를 것이고, 그럼으로써 약 700,000톤이었던 지금까지의 평균생산량을 웃돌 것이다. 이 쿼터는 확실한 생산의 토대이며 사탕무우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라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설탕생산은 공공자금으로 조성되는 현대적인 설탕산업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보장된다.

각각의 설탕생산자에게 생산쿼터를 분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1984/85 회계년도부터 1988/89회계년도 총 쿼터내의 참고생산량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설탕생산자는 농가들과 다시 私的인 사탕무우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농가들에게 공급권을 양도한다.

이때 연방정부는 사탕무우공급권이 다음 원칙에 따라 개별 사탕무우공급자에게 분배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 공급물량은 과거의 공급량에 따라 분배된다. 이때 참고물량이 없는 신설 농가에는 점진적으로 일정한 물량이 양도된다.
- 초기 단계에서는 매년의 공급물량이 합의되고, 그후에 공급물량이 확정된다.

사탕무우 재배농가와 설탕공장 간의 공급계약은 다음 파종시기 이전 적당한 때에 체결된다.

### 2-3 판매와 출하

연방정부는 舊동독 지역의 식료품 생산기업들이 그들의 생산물을 판매할 때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가?

법률적 토대 위해 세워진 ‘독일 농업 및 식품산업을 위한 판매장려기금’(Absatz für derangsfond der dentschen Land und Ernährungswirtschaft)은 일반적으로 식품생산 기업들이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때 지원된다. ‘독일농업 중앙마케팅협회(CMA : Centrale Marketinggesellschaft der deutschen Agrarwirtschayt mbH)’가 판매기금으로 조성되는 여러 조치들을

시행한다. 이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 판매기금법 제10조에 따라 농업과 식품산업으로부터 분담금을 거둔다.

CMA는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시장조사, 판매관리에 관한 조언, 품질향상 기초마케팅 및 판매촉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불충분한 농산물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舊동독 지역에서 농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가공부문과 출하부문을 현대화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다. 舊동독 지역의 식품산업이 황폐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빨리 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장구조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0년에 1억 4천만 마르크가 준비되었다.

이 분야에 대한 장려조치들은 1991년 이후에는 유럽공동체의 과제인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의 한 부분이 된다. 도축장과 목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과일과 채소, 감자, 곡물, 유지작물과 콩과 식물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장려책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 부문별 프로그램이 작성된다.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는 농업 생산물의 가공조건과 출하조건의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해 VO(EWG : Nr. 866/90)와 결합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조치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촉진시키는 비용의 25%까지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추가로 VO(EWG : Nr. 866/90)에 따라 유럽공동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낙농업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舊동독 지역 유가공공장의 생산용 건물들과 기술설비들은 완전히 낡은 것이다. 이런 상태는 결국 생산성과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제품의 70%까지가 서독제품으로 대체되었고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유가공공장의 출하가격은 우유 1kg당 약 10페니히로 서독 유가공공장의 출하가격보다 하락해 있다.



현재 목장구조의 미래에 관한 부문계획(Sektorplan)이 수립되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환에 대해서는 유럽공동체, 독일연방 및 洲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이 지원은 총투자금액의 40%에 이른다. 새로운 낙농장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하고, 실제로 가동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한 3년이 걸린다.

새 낙농장을 완성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생산설비의 공급도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낙농장이 품질과 포장 면에서 소비자의 욕구에 적합한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유럽공동체의 위생규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간에 확보해야만 한다.

이 지원을 위해 1990년에 2억 마르크의 투자금액에 대해 4%의 이자경감을 할 예정이다. 3차 추가예산안에서도 1991 회계년도와 1992회계년도에 지불되도록 각각 800만 마르크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과 함께 전문분야의 리스회사가 낙농기계들과 냉장차량들을 조달한다. 이 장비들은 신탁재산에 관계되지 않는 낙농장(협동조합낙농장)에 임대된다. 그것들은 새 낙농장에서 적절히 계속 사용될 것이다.

### 3. 사회정책과 임금정책

舊동독 지역의 농민을 위한 노후보장(Alterssicherung)은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현재에도 舊동독 지역내에 있는 자영농민들과 LPG조합원들 및 LPG'en과 국영농장(VEG'en)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보편적인 연금보험제도(Rentenversicherung)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농민들과 LPG조합원들은 명확히—원칙적인 예상이긴 하지만—연금보험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없다. 舊동독 지역에는 1991년 말까지 이 포괄적인 보험가입의무가(Versicherungspflicht) 존재할 것이다.

통일 독일의 입법기간은 후세를 위해 농민을 위한 노후보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이때 舊서독 지역의 농민에게 준 노후보조금(Altershilfe)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舊동독 지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만 한다.

이미 얻은 연금(Alterssicherungsschutz (Anwartschaften))은 계속 유지된다.

**舊동독 지역의 의료보험과 재해보험은 현재 어떻게 적용되며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

농민들을 위한 농민의료보험이 1991년 1월 1일자로 포츠담에서 설립되었다.

또한 1991년 1월 1일자로 고유의 농민재해보험도 포츠담에 설립되었다. 이 보험보장은 모든 농업기업가들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로써 원칙적으로는 농민들과 농업노동자들에 대해 동일한 보장제도가 독일 내에 존재하게 되었다.

각각의 보험이 설립될 때까지는 의료보험과 재해보험의 임무를 공동의 사업자(과도기구)가 수행한다.

**과도기노후생활자금(Altersübergangsgeld), 은퇴이전 생활자금(Vorruchestand)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통합때까지는 舊동독의 규정이 조기은퇴연금(Vorruchestandgeld)에 적용된다. 통합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노동자들과 LPG조합원들은 57세부터(1990년 12월 31일까지 여성에 대한 특별규정 : 55세) 과도기노후생활자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최종적인 평균 순급여액(Nettoarbeitsentgelt)의 65%이며 최대로 3년간(법적인 연금보험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과도기) 지급된다. 1991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첫 해에 받는 과도기노후생활자금이 약 5% 정도 증액되었다. 이는 앞으로(5%의 증액된 금액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연금보험에 속하는 연금처럼 약간은 조정될 것이다.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위한 분담금이 인수된다. 자금은 연방노동성(Bundesanstalt für Arbeit) 내지 연방이 부담한다.

새로운 법안을 실행하는 조치들의 유효기간은 1991년 12월 31일까지이며 1년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LPG조합원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호받는가?**

직업적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예를 들어 재교육의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몇 가지 특별규정을 가진 고용촉진법(AFG : Arbeitsförderungs-gesetz)이 舊동독 지역에 도입되었다. LPG의 조합원이라고 해서 노동자(Arbeitnehmertätigkeit)로서 취업에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LPG조합원은(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실업보조금, 단시간 노동, 및 직업적 자격취득(재교육 등)을 받게 된다.

**노사협약법(Tarifvertragsgesetz)에 따른 노사협약당사자(Tarifpartner)는 누구이며, 그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노사협약법(TVG : Tarifvertragsgesetz)은 원칙적으로 구동독 지역에도 적용된다. 노사협약의 당사자들은 TVG의 제2조에 따라 특히 노동조합들과 개개의 사용자, 그리고 사용자들의 연합체가 된다. 노사협약당사자들의 과제는 우선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일이다. 노사협약은 TVG의 제1조에 따라 노사협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고용관계(Arbeitsverhältnissen)의 내용, 체결, 종결을 정하고 기업의 문제와 기업내의 노사관계에 관한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규범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노사협약당사자들의 과제는 단지 임금조건을 교섭하는 것만이 아니고—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노동조건에 관한 합의와 해고통지(Kündigungsschutz)로부터의 보호 등이 된다.

**임금인상은 언제 고려될 수 있겠는가?**

임금인상을 노사협약당사자들이 의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한을 미리 예정할 수는 없다. 임금인상이 가능한지, 또한 어느 정도로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당시 기업의 발전상황과 긴밀히 연관시켜야만 해

결될 수 있다.

농가(Landwirtschaftsbetrieb)를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보험을 계약해야 하는가?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의 분야에도 강제보험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재해보험의 가입자들은 일정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의 강제성하에서 보면 보험을 “계약”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농가의 과제는 적절한 사회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준수하고, 피보험자임을 사회보험업자에게 신고하는 일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건물화재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의무를 둔다.

다음의 보험들을 계약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른다.

- 폭풍으로 인한 재해, 수도관의 손상, 자연 재해에 대비한 건물보험
- 기계적 시설(기계, 도구, 건물의계 설비)에 대한 보험,
- 수확물과 재고(Wirtschaftsvorräte)에 대한 보험,
- 우박보험
- 산불보험
- 가족에 대한 보험
- 책임보험(Haftpflichtversicherung)

#### 4. 조세정책

협동농장과 가족농에 대해 과세할 때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는가?

어떤 조세규정들이 LPG'en의 구조혁신과정을 뒷받침하는가?

物的會社(LPG'en 등등)와 개별 농가(가족농)에 대해 과세할 때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조세제도의 원칙으로 보아 불가능하다.

과세의 균형은 담세능력(Leistungsfähigkeit)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통일조약 부칙 I에 따르면, 협동농장과 舊동독 지역에서 협동조합의 법적 형태를 취한 LPG'en의 권리계승자들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영업세와 재산세를 면제받는다. 1992년과 1993년에도 물론 면제될 수 있는데, 그 전제조건은 그들의 활동이 농업과 임업 경영에 한정될 경우이다.

LPGen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시켜 주는 근거는 농업 활동이—개별 농가에서와 마찬가지로—영업세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기인 1991년에는 적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혼합 활동에(농업과 영업)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

#### 가족농에는 어떤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는가?

농업과 임업의 구조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민가족농가에게 일련의 세제혜택이 돌아간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소득세법(EStG) 제13조 제3항에 따라서 모든 농민과 임업가에게 면세 금액을 2,000마르크(기혼자들은 4,000마르크)로 책정하고,
- EStG의 제13조a에 따른 Durchschnittssätze에 따라 농업과 임업에서 나오는 소득을 조사하고,
- EStG의 제34조e에 따라 농업과 임업 소득에 대해 2,000마르크까지는 세금을 경감하고,
- EStG의 제34조에 따라 특별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경감하고(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14조와 14조a, 제1항의 양도소득(Veräußerungsgewinne))
- 전체 농장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와 같은 특별한 조건하에서는 소득세법의 제14조 14a조에 따른 면세금액이 30,000마르크/90,000마르크/120,000마르크로 된다.

그밖에도 가족농은 판매세법(Umsatzsteuergesetz) 제24a조에 따라서 Währungsausgleich를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허락된 소득조정(Einkommensausgleich)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판매인정과세를 3% 정도 인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 5. 환경정책/식물보호/동물보호

수자원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내의 피해보상은 앞으로 어떻게 규정되는가?

또한 어떤 법적 토대가 적용되는가?

舊동독 지역 내의 수자원보호지역과 자연보호지역내의 피해보상이나 보상금 지불 문제에 대해서는 1991년 6월 1일 이후 수자원이용법 및 연방자연법의 규정들과 또한 그것을 위해 새 洲들이 앞으로 공포해야 하는 洲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수자원보호나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너무 단호해서 그 조치들이 몰수나 몰수와 유사한 재산권 침해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자원보호지역 내에서는 자연보호규정에 의해 토지의 합법적인 농업적 이용이나 임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요구사항들이 증가되어 확정된다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洲法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도 그렇게 보상한다.

자연보호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방자연보호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연보호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지역조건에 맞게 증가된 요구사항들을 확립할 때, 이 요구사항들이 농업과 임업에 관한 법규에서 유래한 요구사항들을 넘어서 이미 시행된 농업적, 임업적, 어업적 토지이용을 제한할 경우를 대비해 책정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피해보상청구권(Entschädigungsansprüche) 내지 보상청구권(Ausgleichsansprüche)을 지급하는 것은 洲의 업무이다.

비료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법규들이 적용되는가?

비료는 비료법 제1a조에 따라서 이용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토지가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과 입지조건과 경작조건을 고려하면서 식물에 맞는 비료의 종류와 양과 시기를 정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비료(Ha-

ndels dünger)의 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배설물(Wirtschaftsdünger)에도 적용된다.

가축분뇨가 통상적으로 농업에 이용되는 비료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洲정부나 해당지역관청이 폐기물法(Abfallgesetz) 제15조에 따라서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그밖에도 자연보호지역에서는 비료에 대해 더 엄격한 요구사항들이 적용된다.

### 어떤 식물보호제(Pflanzenschutz mittel)를 사용할 수 있는가?

舊동독 지역에서는 베를린과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연방 농업 및 임업 생태관리청(BBA : Biologische Bundesanstalt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이 허락하는 모든 식물보호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1988년 7월 27일자 의 ‘식물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규정’과 기존의 식물보호제 이용규정들을 전제로 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舊동독지역에서는 舊동독 법규에 따라 1990년 10월 3일까지 상품포장을 하고 상표를 붙였던 식물보호제들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예외규정도 역시 ‘식물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전제로 하고 적용된다. 이 규정의 제3절(부칙 3과 함께)과 제4, 6, 7조(이것들이 제3조 또는 부칙 3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식물보호제를 위해 1991년 10월 3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BBA는 이 식물보호제에 관한 목록을 발간할 것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장소에서 입수할 수 있다.

Biologische Bundesanstalt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Abteilung für Pflanzenschutzmittel und Anwendungstechnik Messeweg 11/12

3300 Braunschweig(Tel : 0531-399-1)

### 동물보호법(Tierschutzgesetz)은 농장주에게 어떤 의무들을 부과시키는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동물은 키우고 돌보거나 돌보아야 할 사람은 동물의 종류와 동물의 필요에 따라 알맞는 양의 사료를 먹이고, 보호하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넣어야만 한다. 동물의 종류에 적합한 운동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돼지의 사육과 닭장 안에서 산란중인 암탉의 사육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2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통일조약에 따르는 법령들이 발포된다. 돼지사육법령의 규정들은 이후에 단계별로 실시된다. 소사육에 대해서는 유럽의회의 추천사항이 제시된다.

농장주는 특히 어떤 사람도 그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은 주지 못하도록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동물들을 몰아내고, 차에 싣고, 운송하고, 차에서 내릴 때에도 그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농업에 유용한 가축사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동물의 권리침해에 관한 동물보호법의 법규들이다. 그러므로 8일 미만된 새끼양의 꼬리를 자를 때는 부드러운 고리를 사용해야 하며, 숫소, 수돼지, 숫염소, 수양, 숫집토끼를 마취없이 거세하는 시기는 모두 2개월 되었을 때이다.

## 6. 동물위생

백혈병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의 토대는 독일연방의 가축전염병법 규정들과 그에 관한 유럽공동체法이다. 이는 10월 3일 이후에는 구동독 지역에도 무조건적으로 적용된다. 그후에야 종자용 소와 일반소를 다른 목장과 시장에 보낼 수 있게 되고, 백혈병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가진 목장에서 소를 출하할 수 있게 된다. 도살되는 소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락할 수 있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전염병의 의심이 있는 동물들은 빨리 도태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용 실험시설도 확장해야만 한다. 유럽공동체 내에서 다른 회원국들과 무역을 할 때 엄격한 감독을 함으로써 전염병의 전염을 막아야만 한다.

목장에서와 동물무역에 있어서 전염병방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농장주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연방정부는 소의 백혈병을 극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는가?



구동독 지역 내에서의 위생개선계획(Sanierungsprogramm)은 백혈병이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협력을 받아서 1993년 말까지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혈병에 걸린 소 약 130만 마리—주로 젖소—를 이 기간 중에 도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축전염병과 가축질병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축전염병법의 원칙에 따라서 가축소유주의 고유책임(Eigenverantwortung)이 분명히 앞에 나타나 있다.

가축사육자는 그들의 동물을 위해 동물의 위생상태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가축전염병이 들어오거나 전파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 의무가 있다.

동물무역은 가축 질병 전염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축전염병법의 규정들은 가축사육자들이 동물무역을 통해 질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한을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가축전염병법, 가축거래규정 및 유럽공동체 내의 무역에 관해 유럽공동체가 기준을 정한 가축전염병의 규정들이다. 동시에 가축사육자는 필요한 관청의 증명서가 있는 건강하고 운송할 수 있는 동물들을 무역해야만 한다. 구체적인 요건들에 관해서는 관할 獸醫師局(Veterinäramt)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발생가능성은 관할 주의사국에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가축전염병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가축전염병).

#### 가축전염병보험(Tierseuchenkasse)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잘 알려진대로 가축에 대한 지금까지의 책임보험 형태들은 폐지되었다. 그러므로 가축전염병법의 효력발생과 함께 각 洲의 책임 아래 가축전염병 보험들이 형성되고 시행된다. 이 보험들은 가축전염병법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가축에 대한 피해보상을 행한다. 즉, 전염병이나 전염병에 대한 의심으로 인한 관청의 명령에 의해 도살되거나, 신고의무가 있는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된 가축에 대해 피해보상을 한다.

가축전염병보험은 가축사육자들의 연대책임 협동조합(Solidargemeinschaft)의 형태가 된다. 보험의 목표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축위생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축사육자들은 매년마다 말, 소, 돼지, 양, 가금, 담수어에 대해 각각 분담금을 납부하며, 이때 분담금의 정도는 기금의 자금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은 계약할 때는 구속력을 가진 가축전염병보험에 대한 책임과 이행 내지 가축전염병보험이 행하는 책임과 이행을 고려해야 한다.

가축손실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가축전염병법에 따라 재정이 가축소유주들의 분담금으로부터 절반씩 지급한다. 특정한 종류의 동물에 대한 분담금이 징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전액 국고에서(洲의 재정에서) 지급된다.

일정한 주의의무(Sorgfaltspflichten)를 무시한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동물의 사체와 부산물을 다른 장소로 보내는 일은 누가 책임지며,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동물사체처리시설(Tierkörperbeseitigungsanstalten)에서 나오는, 제거할 의무가 있는 동물사체, 동물사체에 일부분과 부산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공공의 과제이며, 동물사체처리법(Tierkörperbeseitigungsgesetz)에 따라 공권력을 가진 洲法에 관할 단체가 책임을 진다.

## 7. 농촌지도(Beratung)

舊동독 지역의 농촌지도는 어떤 의미와 위치를 가지며 행정조직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가?

구동독 지역의 농촌지도는 아마 舊서독 지역의 농촌지도와 같아질 것이다. 관에 의한 농촌지도사업(Beratungsdienst) 외에도 私的인 농촌지도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농민은 어떤 농촌지도기구(Beratungsinstitution)를 이용할 수 있는가?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각 주의 과제에 속한다. 공적인 농촌지도 사업 외에도 사적인 농촌지도사업형태들(Ringe, Arbeitskreise 등등)이 발생할 때라고 예측된다.

1991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Übergangsfrist)을 위해 「독일연방 식량·농업·임업부」(BML)는 농업과 원예업을 하는 농가들을 위한 사적인 농촌지도를 장려할 것을 고려하였다. 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자격있는 농촌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이후에 이 농촌지도서비스(Unternehmensberatung)를 이용할 것을 장려할 것이다. 이때 농촌지도는 정평있는 지도기관(Berater/Beratungsunternehmen)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연방정부는 농촌지도를 어떻게 장려하는가?

재조직/설립 또는 기타 커다란 투자조치들에는 중요하고 복잡한 경제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물론 기업의 장래의 성과는 올바른 기업적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므로 연방정부측에서는 경과기간중에 농업농가와 원예농가를 위한 지도(Unternehmensberatung)의 장려를 생각하고 있다.

그 장려조치의 내용은 추정된 농촌지도비용(Beratungskosten)에 (판매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 농촌지도비용에는

- 지도사의 사례비와
- 지출비용과 여행비용이 속한다.

보조금은 매건의 농촌지도에 대해

- 추정된 비용의 80%까지
- 최대로 3,000마르크까지 지급된다.

총 보조금은 다음의 최고금액까지 지급될 수 있다 :

- 농장설립지도(Existenzgründungsberatungen)를 신청하는 각 신청자에게는 3,000마르크까지
- 기타의 모든 농촌지도에는 3,000마르크까지, 특히 중대하고 노동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9,000마르크까지

주로 다음 문제에 관계된 기타의 농촌지도는 장려조치에서 제외된다.

- 조세문제 또는 공공 보조금을 얻기 위한 지도(Beratung)

- 생산기술상의 문제들을 위한 지도
-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관계된 지도
- 국유재산이나 국영기업의 권리계승자인 기업들은 이 장려조치들을 받지 못하는 데, 그들에게는 국가가 25%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참가했기 때문이다.

관계자의 이해관계안에서 전문지도(qualifizierte Beratung)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도가 정평있는 지도기관(Berater/Beratungsunternehmen)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에만 장려금(Unternehmensberatung)의 사용이 장려된다. 지도자(Berater)승인 신청은 농촌지도를 수행하기 전에 공공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보조금신청(Zuschußanträge)은 공공서식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계약한 이후 다음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Deutsche Landwirtschafts gesellschaft

Fachbereich Betriebswirtschaft

Zimmerweg 16

W-6000 Frankfurt/M

Tel : 069/71 68 244

Telex : 41 31 85 dlq d

Tele fax : 069/72 41 554

여기에서는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승인받은 농촌지도사/농촌지도조직에 관한 목록을 갖추고 있다.

이 장려조치들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 자료의 출처

### ‘농업정책 보고서’

- Nr. 8/90 농업의 기업형태와 그들에 대한 과세
- Nr. 9/90 농업용 토지의 구입과 임차 및 미해결된 재산문제의 해명
- Nr. 13/90 1983년부터 1990년까지의 농업정책을 개관함

Nr. 14/90 구동독 지역의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매진됨)

Nr. 15/90 1991년부터 개별 농가에 대한 투자촉진조치들

Nr. 16/90 1991년의 Agrarstrukturförderung을 개관함.

### 우리 농민을 위한 정책'

Nr. 1/1990 1991년중 구서독과 구동독이 농업에 대한 개별농가적인 장려조치들에 관한 보고와, 농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 관한 보고 및 중요한 환경정책 규정들에 관한 보고

Nr. 2/1991 LPG'en의 구조혁신과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자원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와, 구동독 지역의 우유와 설탕 부문을 위한 쿼터규정에 대한 보고 등. 이보고서는 아마 1991년 2월 말부터 배포할 수 있음.

Nr. 3/1991 1991/92 회계년도에 구서독과 구동독의 휴경, 조방농업 및 농업생산의 전환 조치들에 관한 보고.

이 보고서는 아마 1991년 4월부터 배포할 수 있음.

빈

면

연구자료 D76-3

독일농업시리즈 ③

구 동독 농가들을 위한 농업정보

---

1992년 12월

發行人 許 信 行

發行情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5-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

出處를 明示한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